

2005년도 적용

표준품셈 개정내용

2004.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 토목부문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3 적용방법	보완	<p>1.3 적용방법</p> <p>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다.</p> <p>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을 발주청에서 활용한 경우, 발주청이 동 기술을 표준품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시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표준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다.</p> <p>9. 표준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서는 상기 8항의 품을 표준품셈 개정절차에 따라 표준품셈의 “부록”에 「참고품」으로 수록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1.3 적용방법</p> <p>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p> <p>8. _____ _____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건설기술연구원)</p> <p>9. _____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건설기술연구원)</p>	
1-4 수량의 계산	보완	<p>1-4 수량의 계산</p> <p>1. 수량은 C.G.S 단위로 사용한다.</p> <p>2-9 (생략)</p>	<p>1-4 수량의 계산</p> <p>1. “삭제”</p> <p>1-8 (현행과 같음)</p>	
1-8 주요자재	보완	<p>[참고]</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9.9)</p> <p>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주요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0조, 제21조 참조></p>	<p>[참고]</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8.24)</p> <p>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삭제”></p>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5-19 차수제공	보완	5-19 차수제공 [주] ⑦시트의 규격은 두께 1.5mm, 폭 4.5mm 를 기준한 것이다.	5-19 차수제공 [주] ⑦시트의 규격은 두께 1.5mm, 폭 4.5m 를 기준한 것이다.																																																																																																																	
6-1-9 에폭시 콘크리트 17-7 강형도장	보완	6-1-9 에폭시 콘크리트 17-7 강형도장 “계령공”	6-1-9 에폭시 콘크리트 17-7 강형도장 “도장공”																																																																																																																	
8-3 갯돌 채취 8-4 갯잡석 채취	보완	8-3 갯돌 채취 8-4 갯잡석 채취 8-3 갯돌(割石)채취 (m ² 당)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별 뒤길이(cm)</th> <th>화약 (kg)</th> <th>뇌관 (개)</th> <th>도화선 (m)</th> <th>갱부 (인)</th> <th>할석공 (인)</th> <th>대장공 (인)</th> <th>보통인부 (인)</th> </tr> </thead> <tbody> <tr> <td>3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5</td> <td></td> <td>(생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①~④ (생략) 8-4 갯잡석(雜割石)채취 (m ² 당)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별</th> <th>화약 (kg)</th> <th>뇌관 (개)</th> <th>도화선 (m)</th> <th>갱부 (인)</th> <th>할석공 (인)</th> <th>대장공 (인)</th> <th>보통인부 (인)</th> </tr> </thead> <tbody> <tr> <td>수량</td> <td></td> <td>(생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①~⑤ (생략)	종별 뒤길이(cm)	화약 (kg)	뇌관 (개)	도화선 (m)	갱부 (인)	할석공 (인)	대장공 (인)	보통인부 (인)	35								45		(생략)						55								60								종별	화약 (kg)	뇌관 (개)	도화선 (m)	갱부 (인)	할석공 (인)	대장공 (인)	보통인부 (인)	수량		(생략)						8-3 갯돌 채취 8-4 갯잡석 채취 8-3 갯돌(割石)채취 (m ² 당)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별 뒤길이(cm)</th> <th>화약 (kg)</th> <th>뇌관 (개)</th> <th>도화선 (m)</th> <th>갱부 (인)</th> <th>할석공 (인)</th> <th>특별인부 (인)</th> <th>보통인부 (인)</th> </tr> </thead> <tbody> <tr> <td>3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5</td> <td></td> <td colspan="2">(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①~④ (현행과 같음) 8-4 갯잡석(雜割石)채취 (m ² 당)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별</th> <th>화약 (kg)</th> <th>뇌관 (개)</th> <th>도화선 (m)</th> <th>갱부 (인)</th> <th>할석공 (인)</th> <th>특별인부 (인)</th> <th>보통인부 (인)</th> </tr> </thead> <tbody> <tr> <td>수량</td> <td></td> <td colspan="2">(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①~⑤ (현행과 같음)	종별 뒤길이(cm)	화약 (kg)	뇌관 (개)	도화선 (m)	갱부 (인)	할석공 (인)	특별인부 (인)	보통인부 (인)	35								45		(현행과 같음)						55								60								종별	화약 (kg)	뇌관 (개)	도화선 (m)	갱부 (인)	할석공 (인)	특별인부 (인)	보통인부 (인)	수량		(현행과 같음)						
종별 뒤길이(cm)	화약 (kg)	뇌관 (개)	도화선 (m)	갱부 (인)	할석공 (인)	대장공 (인)	보통인부 (인)																																																																																																													
35																																																																																																																				
45		(생략)																																																																																																																		
55																																																																																																																				
60																																																																																																																				
종별	화약 (kg)	뇌관 (개)	도화선 (m)	갱부 (인)	할석공 (인)	대장공 (인)	보통인부 (인)																																																																																																													
수량		(생략)																																																																																																																		
종별 뒤길이(cm)	화약 (kg)	뇌관 (개)	도화선 (m)	갱부 (인)	할석공 (인)	특별인부 (인)	보통인부 (인)																																																																																																													
35																																																																																																																				
45		(현행과 같음)																																																																																																																		
55																																																																																																																				
60																																																																																																																				
종별	화약 (kg)	뇌관 (개)	도화선 (m)	갱부 (인)	할석공 (인)	특별인부 (인)	보통인부 (인)																																																																																																													
수량		(현행과 같음)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8-6 하천골재채취선	신설 (이월)		<p>8-6 하천골재채취선</p> <p>1. 하천골재채취선 작업량</p> $Q = \frac{q \cdot b \cdot E}{1,000}$ <p>여기서 Q : 시간당 준설량(m³/hr) q : 하천골재채취선 1,000HP의 시간당 준설량(m³/hr) b : 하천골재채취선의 마력(HP) E : 작업효율</p> <p>2. 하천골재채취선 1,000HP의 시간당 준설량(q표)</p> <table border="1" data-bbox="1240 651 1962 858"> <thead> <tr> <th>구분</th> <th>상태</th> <th>N치</th> <th>100</th> <th>150</th> <th>200</th> <th>300</th> <th>400</th> <th>500</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모래질토사</td> <td>연질</td> <td>10이하</td> <td>340</td> <td>340</td> <td>340</td> <td>340</td> <td>335</td> <td>330</td> </tr> <tr> <td>중질</td> <td>10~20</td> <td>305</td> <td>305</td> <td>305</td> <td>300</td> <td>295</td> <td>285</td> </tr> <tr> <td>경질</td> <td>20이상</td> <td>270</td> <td>270</td> <td>270</td> <td>265</td> <td>260</td> <td>250</td> </tr> <tr> <td rowspan="2">자갈섞인 모래질토사</td> <td>연질</td> <td>30이하</td> <td>180</td> <td>180</td> <td>180</td> <td>165</td> <td>160</td> <td>150</td> </tr> <tr> <td>경질</td> <td>30이상</td> <td>150</td> <td>150</td> <td>145</td> <td>140</td> <td>130</td> <td>120</td> </tr> </tbody> </table> <p>3. 작업효율(E)</p> <table border="1" data-bbox="1245 954 1962 1145"> <thead> <tr> <th rowspan="2">천후, 평면형상, 위치등</th> <th>유속</th> <th rowspan="2">느림</th> <th rowspan="2">보통</th> <th rowspan="2">빠름</th> </tr> <tr> <th>보통</th> </tr> </thead> <tbody> <tr> <td>보통</td> <td>보통</td> <td>0.93</td> <td>0.79</td> <td>0.68</td> </tr> <tr> <td>약간나쁘다</td> <td>보통</td> <td>0.88</td> <td>0.77</td> <td>0.64</td> </tr> <tr> <td>나쁘다</td> <td>보통</td> <td>0.78</td> <td>0.68</td> <td>0.56</td> </tr> </tbody> </table> <p>4. 배사관 소모율 (시간당)</p> <table border="1" data-bbox="1245 1283 1962 1442"> <thead> <tr> <th>구분</th> <th>자갈함유량(%)</th> <th>단위</th> <th>소모율</th> </tr> </thead> <tbody> <tr> <td>모래질토사</td> <td>-</td> <td>개</td> <td>1.7×10⁻⁴</td> </tr> <tr> <td rowspan="2">자갈섞인 모래질토사</td> <td>20이하</td> <td>개</td> <td>4.6×10⁻⁴</td> </tr> <tr> <td>20이상</td> <td>개</td> <td>13.9×10⁻⁴</td> </tr> </tbody> </table> <p>* 배사관규격 12“(14”)×12m×12mm 기준</p>	구분	상태	N치	100	150	200	300	400	500	모래질토사	연질	10이하	340	340	340	340	335	330	중질	10~20	305	305	305	300	295	285	경질	20이상	270	270	270	265	260	250	자갈섞인 모래질토사	연질	30이하	180	180	180	165	160	150	경질	30이상	150	150	145	140	130	120	천후, 평면형상, 위치등	유속	느림	보통	빠름	보통	보통	보통	0.93	0.79	0.68	약간나쁘다	보통	0.88	0.77	0.64	나쁘다	보통	0.78	0.68	0.56	구분	자갈함유량(%)	단위	소모율	모래질토사	-	개	1.7×10 ⁻⁴	자갈섞인 모래질토사	20이하	개	4.6×10 ⁻⁴	20이상	개	13.9×10 ⁻⁴	
구분	상태	N치	100	150	200	300	400	500																																																																																			
모래질토사	연질	10이하	340	340	340	340	335	330																																																																																			
	중질	10~20	305	305	305	300	295	285																																																																																			
	경질	20이상	270	270	270	265	260	250																																																																																			
자갈섞인 모래질토사	연질	30이하	180	180	180	165	160	150																																																																																			
	경질	30이상	150	150	145	140	130	120																																																																																			
천후, 평면형상, 위치등	유속	느림	보통	빠름																																																																																							
	보통																																																																																										
보통	보통	0.93	0.79	0.68																																																																																							
약간나쁘다	보통	0.88	0.77	0.64																																																																																							
나쁘다	보통	0.78	0.68	0.56																																																																																							
구분	자갈함유량(%)	단위	소모율																																																																																								
모래질토사	-	개	1.7×10 ⁻⁴																																																																																								
자갈섞인 모래질토사	20이하	개	4.6×10 ⁻⁴																																																																																								
	20이상	개	13.9×10 ⁻⁴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8-6 하천골재채취선	신설 (이월)		○ 기계손료												
			(9100) 하천골재채취선												
			분류 번호	규격 (HP)	내용 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시 간 당(10 ⁻⁷)					계
										상각비 계 수	정비비 계 수	관리비 계 수			
			9100-												
			0008	800	24,000	3,000	0.9	0.85	0.14	375	354	283	1,012		
			0010	1,000	24,000	3,000	0.9	0.85	0.14	375	354	283	1,012		
			0012	1,200	24,000	3,000	0.9	0.85	0.14	375	354	283	1,012		
			0013	1,300	24,000	3,000	0.9	0.85	0.14	375	354	283	1,012		
			0014	1,400	24,000	3,000	0.9	0.85	0.14	375	354	283	1,012		
0015	1,500	24,000	3,000	0.9	0.85	0.14	375	354	283	1,012					
0016	1,600	24,000	3,000	0.9	0.85	0.14	375	354	283	1,012					
○ 운전경비															
(9100) 하천골재채취선															
명칭	단위	규격							비고						
		800 HP	1,000 HP	1,200 HP	1,300 HP	1,400 HP	1,500 HP	1,600 HP							
주연료	ℓ/hr	123.8	152.4	208.3	225.4	242.6	259.8	276.9							
잡재료	%	35	35	30	30	30	30	30	주연료 의%						
준설선 기관사	"	1	1	1	1	1	1	1	1교대						
준설선 운전자	"	1	1	1	1	1	1	1	"						
보통선원	"	1	1	1	1	1	1	1	"						
[주] 잡재료는 윤활유, 구리스, 작동유 이외에 케이싱, 임펠라등의 소모품비도 포함되어 있다.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8-6 하천골재채취선	신설 (이월)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건설기계가격</td> </tr> <tr> <td>분류번호</td> <td>가격(천원)</td> </tr> <tr> <td>9100-0008</td> <td>(562,656)</td> </tr> <tr> <td>0010</td> <td>(753,321)</td> </tr> <tr> <td>0012</td> <td>(795,900)</td> </tr> <tr> <td>0013</td> <td>(863,278)</td> </tr> <tr> <td>0014</td> <td>(929,684)</td> </tr> <tr> <td>0015</td> <td>(996,090)</td> </tr> <tr> <td>0016</td> <td>(1,062,496)</td> </tr> </table> <p>()내는 국산기계 가격이며 원화(단위:천원)로 표시한 것이다. ※ 본 기준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p>	○ 건설기계가격		분류번호	가격(천원)	9100-0008	(562,656)	0010	(753,321)	0012	(795,900)	0013	(863,278)	0014	(929,684)	0015	(996,090)	0016	(1,062,496)											
○ 건설기계가격																																
분류번호	가격(천원)																															
9100-0008	(562,656)																															
0010	(753,321)																															
0012	(795,900)																															
0013	(863,278)																															
0014	(929,684)																															
0015	(996,090)																															
0016	(1,062,496)																															
10-10 모우터 그레이더	보완	10-10 모우터 그레이더 $Q = 60 \times \ell \times D \times H \times f \times E / P \times \text{cm}$ H : 굴착 깊이 또는 흙고르기 <u>두께(cm)</u>	10-10 모우터 그레이더 $Q = 60 \times \ell \times D \times H \times f \times E / P \times \text{cm}$ H : 굴착 깊이 또는 흙고르기 <u>두께(m)</u>																													
10-12 로올러	보완 (이월)	10-12 로올러 2. 소요 다짐회수(N) 및 다짐두께(D)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종</th> <th>다짐두께 (cm)</th> <th>다짐기계</th> <th>규격 (Ton)</th> <th>다짐 회수</th> <th>다짐도 (%)</th> </tr> </thead> <tbody> <tr> <td>축제</td> <td>30</td> <td><u>진동로올러 (자주식)</u></td> <td><u>10</u></td> <td><u>6</u></td> <td><u>85이상</u></td> </tr> </tbody> </table> <p>[주] ① 다짐회수는 동일지점을 하중륜이 통과한 회수로 한다. ② 다짐두께는 다져진 상태의 두께이다.</p>	공종	다짐두께 (cm)	다짐기계	규격 (Ton)	다짐 회수	다짐도 (%)	축제	30	<u>진동로올러 (자주식)</u>	<u>10</u>	<u>6</u>	<u>85이상</u>	10-12 로올러 2. 소요 다짐회수(N) 및 다짐두께(D)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종</th> <th>다짐두께 (cm)</th> <th>다짐기계</th> <th>규격 (Ton)</th> <th>다짐 회수</th> <th>다짐도 (%)</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축제</td> <td rowspan="2">30</td> <td><u>양족식로올러 (자주식)</u></td> <td><u>19</u></td> <td><u>5</u></td> <td><u>90이상</u></td> </tr> <tr> <td><u>진동로올러 타이어로올러</u></td> <td><u>8~15</u></td> <td><u>4</u></td> <td><u>90이상</u></td> </tr> </tbody> </table> <p>[주] ①, ② (현행과 같음)</p>	공종	다짐두께 (cm)	다짐기계	규격 (Ton)	다짐 회수	다짐도 (%)	축제	30	<u>양족식로올러 (자주식)</u>	<u>19</u>	<u>5</u>	<u>90이상</u>	<u>진동로올러 타이어로올러</u>	<u>8~15</u>	<u>4</u>	<u>90이상</u>	
공종	다짐두께 (cm)	다짐기계	규격 (Ton)	다짐 회수	다짐도 (%)																											
축제	30	<u>진동로올러 (자주식)</u>	<u>10</u>	<u>6</u>	<u>85이상</u>																											
공종	다짐두께 (cm)	다짐기계	규격 (Ton)	다짐 회수	다짐도 (%)																											
축제	30	<u>양족식로올러 (자주식)</u>	<u>19</u>	<u>5</u>	<u>90이상</u>																											
		<u>진동로올러 타이어로올러</u>	<u>8~15</u>	<u>4</u>	<u>90이상</u>																											
10-37 유압식압인인발기	보완	10-37 유압식압인인발기 가. 준비시간(Ts) <u>Tc=0.52L+5.12</u>	10-37 유압식압인인발기 가. 준비시간(Ts) <u>Ts=0.52L+5.12</u>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2-36 표시못	신설	12- 표시못	12-36 표시못 (개당) <table border="1" data-bbox="1223 240 1962 339"> <thead> <tr> <th>구분</th> <th>수량</th> <th>단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보통인부</td> <td>0.106</td> <td>인</td> <td>일반구간</td> </tr> <tr> <td>0.036</td> <td>인</td> <td>도로구간</td> </tr> </tbody> </table> <p>[주] ① 본품은 노면을 천공하고 관로표시못을 삽입 및 고정하는 것이며, 보통인부 2인 1조로 계상된 것이다.</p> <p>② 노면상태(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에 따른 품은 동일하다.</p> <p>③ 본품은 트럭(1ton), 발전기(5kw), 드릴(358HP)를 기준한 것으로 본 장비의 공구손료를 포함한 잡재료(채움모르타르)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p> <p>④ 현장여건에 따라 신호수와 측량공을 각각 (0.053인:일반구간, 0.018인:도로구간)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1229 643 1955 799"> <tbody> <tr> <td>일반구간</td> <td>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td> </tr> <tr> <td>도로구간</td> <td>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td> </tr> </tbody> </table>	구분	수량	단위	비고	보통인부	0.106	인	일반구간	0.036	인	도로구간	일반구간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도로구간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구분	수량	단위	비고																
보통인부	0.106	인	일반구간																
	0.036	인	도로구간																
일반구간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도로구간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17 수심측량 및 수중 지층탐사	보완	제 21-17 수심측량 및 수중지층탐사		제 21-17 수심측량 및 수중지층탐사															
		1. 계획 (1건당)		인 원 수				비 고											
		종별	인원수	비고	일 당	건 당			개 소 당	군 소 당	도 업 당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인 부	잠 수 부	검 조 부	
		특급기술자	1								1	1	2	4					
		고급기술자	1								1	2	3	6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4																
		2. 왕복이동 (1건당)		3. 해상기준점측량				1. 계획			1								
		종별	인원수	비고	가. 표지설치			1						1	1	2	4	해상기준점6점	
		특급기술자	1		1										1	1	2	2	1개반 1일당 관측점 3점
고급기술자	2		1									1	1	2		해상기준점3점			
중급기술자	3		1						1		1	2							
초급기술자	6		1						1	1	2	2				작업량4km [주]단, 다각측량품을 별도 계상한다.			
3. 해상 기준점측량		가. 선표 (일당)			5. 조석 및 조류관측			가. 조석관측			1. 계획			1					
종별	인원수	비고	(1)점조소 설치					1				1		1	3	1	1개반 1일당 관측점 3점		
고급기술자	1								1			1					30일분 조석기록관측 [주]다만,조석 및 조류관측 만을 시행할 때 계상한다		
중급기술자	1	해상기준점6점																	
초급기술자	2		1						1		1	2					30일분 조석기록분석		
인 부	4		나. 조류관측			(2) 관측													
나. 관측 (일당)		(1) 관측			(3) 조화분석														
종별	인원수	비고							1										
고급기술자	1								1										
중급기술자	1	1개반 1일당 관측점																	
초급기술자	2	3점																	
인 부	2		나. 조류분해			(1) 관측													
		(1) 관측			(2) 조류분해														
종별	인원수	비고							1										
고급기술자	1								1										
중급기술자	1	1개반 1일당 관측점							1										
초급기술자	2	3점																	
인 부	2		6. 저질조사			7. 노간출암조사													
		6. 저질조사			7. 노간출암조사														
종별	인원수	비고	1						1	1	2	2					8개소기준		
고급기술자	1								1	5	5								
중급기술자	1	1개반 1일당 관측점																	
초급기술자	2	3점																	
인 부	2																		

항목	구분	현행	개정 (안)	비고																		
21-17 수심측량 및 수중지 층탐사)	보완	다. 조정 및 분석 (일당)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 <th>인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특급기술자</td> <td>1</td> <td rowspan="3">해상기준점 3점</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r> </tbody> </table>			종별	인원수	비고	특급기술자	1	해상기준점 3점	중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2								
		종별			인원수	비고																
		특급기술자			1	해상기준점 3점																
		중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2																	
		4. 해안선 측량 (일당)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 <th>인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고급기술자</td> <td>1</td> <td rowspan="4">작업량 4km</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r> <tr> <td>인 부</td> <td>2</td> </tr> </tbody> </table>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1	작업량 4km	중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2	인 부	2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1	작업량 4km																
		중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2																					
인 부	2																					
[주] 단, 다각측량품은 별도 계상한다.	5. 조석 및 조류관측	가. 조석관측	(1) 검조소 설치 (개소당)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 <th>인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고급기술자</td> <td>1</td> <td rowspan="4">1개반 1일당 관측점 3점</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1</td> </tr> <tr> <td>잠수부</td> <td>1</td> </tr> <tr> <td>인 부</td> <td>3</td> </tr> </tbody> </table>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1	1개반 1일당 관측점 3점	초급기술자	1	잠수부	1	인 부	3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1	1개반 1일당 관측점 3점																				
초급기술자	1																					
잠수부	1																					
인 부	3																					
(2) 관측 (개소당)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 <th>인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중급기술자</td> <td>10</td> <td rowspan="2">30일분 조석기록관측</td> </tr> <tr> <td>검조부</td> <td>30</td> </tr> </tbody> </table>	종별	인원수	비고	중급기술자	10	30일분 조석기록관측	검조부	30	[주] 다만, 조석 및 조류관측만을 시행할 때 계상한다.	(3) 조화분석 (건당)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 <th>인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특급기술자</td> <td>1</td> <td rowspan="3">30일분 조석 기록분석</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r> </tbody> </table>	종별	인원수	비고	특급기술자	1	30일분 조석 기록분석	중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2
종별	인원수	비고																				
중급기술자	10	30일분 조석기록관측																				
검조부	30																					
종별	인원수	비고																				
특급기술자	1	30일분 조석 기록분석																				
중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2																					

항목	구분	현행	개정 (안)	비고															
21-17 수심측량 및 수중지 층탐사	보완	<p>나. 조류관측 (개소당)</p> <table border="1" data-bbox="378 229 1106 541"> <thead> <tr> <th>종별</th> <th>특급기술자</th> <th>고급기술자</th> <th>중급기술자</th> <th>초급기술자</th> </tr> </thead> <tbody> <tr> <td>관측</td> <td></td> <td>1 1주야(25시간)</td> <td>3 (관측)</td> <td>- -</td> </tr> <tr> <td>조류분해</td> <td>1 (단기조류 조화분해)</td> <td></td> <td>1 4개 주조 (항류1일, 1/2일 및 1/4일)산출</td> <td>2</td> </tr> </tbody> </table>	종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관측		1 1주야(25시간)	3 (관측)	- -	조류분해	1 (단기조류 조화분해)		1 4개 주조 (항류1일, 1/2일 및 1/4일)산출	2		
		종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관측		1 1주야(25시간)	3 (관측)	- -													
		조류분해	1 (단기조류 조화분해)		1 4개 주조 (항류1일, 1/2일 및 1/4일)산출	2													
		<p>6. 저질조사 (일당)</p> <table border="1" data-bbox="378 719 1093 932"> <thead> <tr> <th>종별</th> <th>인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고급기술자</td> <td>1</td> <td rowspan="4">8개소기준</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r> <tr> <td>인 부</td> <td>2</td> </tr> </tbody> </table>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1	8개소기준	중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2	인 부	2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1	8개소기준															
중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2																		
인 부	2																		
<p>7. 노간출암조사 (2군소당)</p> <table border="1" data-bbox="378 1114 1106 1302"> <thead> <tr> <th>종별</th> <th>인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고급기술자</td> <td>1</td> <td></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5</td> <td></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5</td> <td></td> </tr> </tbody> </table>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5		초급기술자	5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5																		
초급기술자	5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17 수심측량 및 수중지 층탐사	보완	8. 수심측량 가. (생 략) 나. 측심작업 (1) 축척 1/10,000	(일당)	8. 수심측량 가. (현행과 같음) 나. 측심작업 (1) 축척별	(일당)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종별</th> <th colspan="4">인원수</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2">외업</th> <th colspan="2">내업</th> </tr> <tr> <th>단범</th> <th>멀티범</th> <th>단범</th> <th>멀티범</th> </tr> </thead> <tbody> <tr> <td>특급기술자</td> <td>1</td> <td>1</td> <td>-</td> <td>1</td> <td rowspan="4"></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td> <td>1</td> <td>1</td> <td>4</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d>2</td> <td>1</td> <td>4</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d>-</td> <td>2</td> <td>5</td> </tr> </tbody> </table>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범	멀티범	단범	멀티범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1	4	중급기술자	1	2	1	4	초급기술자	2	-	2	5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축척</th> <th rowspan="3">종별</th> <th colspan="4">인원수</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2">외업</th> <th colspan="2">내업</th> </tr> <tr> <th>단범</th> <th>멀티범</th> <th>단범</th> <th>멀티범</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1/10,000</td> <td>특급기술자</td> <td>1</td> <td>1</td> <td>-</td> <td>1</td> <td rowspan="4">[주] 단 축척은 1/10,000이하일 때에는1/10,000 으로 본다</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td> <td>1</td> <td>1</td> <td>4</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d>2</td> <td>1</td> <td>4</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d>-</td> <td>2</td> <td>5</td> </tr> <tr> <td rowspan="4">1/5,000</td> <td>특급기술자</td> <td>1</td> <td>1</td> <td>-</td> <td>1</td> <td rowspan="4"></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td> <td>1</td> <td>1.5</td> <td>4.5</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d>2</td> <td>1.5</td> <td>4.5</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d>-</td> <td>3</td> <td>5</td> </tr> <tr> <td rowspan="4">1/2,500</td> <td>특급기술자</td> <td>1</td> <td>1</td> <td>-</td> <td>1</td> <td rowspan="4"></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td> <td>1</td> <td>2</td> <td>5</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d>2</td> <td>2</td> <td>5</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d>-</td> <td>4</td> <td>5</td> </tr> <tr> <td rowspan="4">1/1,000</td> <td>특급기술자</td> <td>1</td> <td>1</td> <td>-</td> <td>1</td> <td rowspan="4"></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td> <td>1</td> <td>3</td> <td>5</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d>2</td> <td>3</td> <td>6</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d>-</td> <td>6</td> <td>5</td> </tr> </tbody> </table>				축척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범	멀티범	단범	멀티범	1/10,000	특급기술자	1	1	-	1	[주] 단 축척은 1/10,000이하일 때에는1/10,000 으로 본다	고급기술자	-	1	1	4	중급기술자	1	2	1	4	초급기술자	2	-	2	5	1/5,000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1.5	4.5	중급기술자	1	2	1.5	4.5	초급기술자	2	-	3	5	1/2,500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2	5	중급기술자	1	2	2	5	초급기술자	2	-	4	5	1/1,000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3	5	중급기술자	1	2	3	6	초급기술자	2	-	6	5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범	멀티범	단범	멀티범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1	4																																																																																																																																													
							중급기술자	1	2	1	4																																																																																																																																													
							초급기술자	2	-	2	5																																																																																																																																													
							축척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범	멀티범	단범	멀티범																																																																																																																																																					
1/10,000	특급기술자	1	1	-	1	[주] 단 축척은 1/10,000이하일 때에는1/10,000 으로 본다																																																																																																																																																		
	고급기술자	-	1	1	4																																																																																																																																																			
	중급기술자	1	2	1	4																																																																																																																																																			
	초급기술자	2	-	2	5																																																																																																																																																			
1/5,000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1.5	4.5																																																																																																																																																			
	중급기술자	1	2	1.5	4.5																																																																																																																																																			
	초급기술자	2	-	3	5																																																																																																																																																			
1/2,500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2	5																																																																																																																																																			
	중급기술자	1	2	2	5																																																																																																																																																			
	초급기술자	2	-	4	5																																																																																																																																																			
1/1,000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3	5																																																																																																																																																			
	중급기술자	1	2	3	6																																																																																																																																																			
	초급기술자	2	-	6	5																																																																																																																																																			
[주] 단, 축척은 1/10,000 이하일 때에는 1/10,000으로 본다.																																																																																																																																																								
(2) 축척 1/5,000				(일당)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종별</th> <th colspan="4">인원수</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2">외업</th> <th colspan="2">내업</th> </tr> <tr> <th>단범</th> <th>멀티범</th> <th>단범</th> <th>멀티범</th> </tr> </thead> <tbody> <tr> <td>특급기술자</td> <td>1</td> <td>1</td> <td>-</td> <td>1</td> <td rowspan="4"></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td> <td>1</td> <td>1.5</td> <td>4.5</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d>2</td> <td>1.5</td> <td>4.5</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d>-</td> <td>3</td> <td>5</td> </tr> </tbody> </table>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범	멀티범	단범	멀티범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1.5	4.5	중급기술자	1	2	1.5	4.5	초급기술자	2	-	3	5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범	멀티범	단범	멀티범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1.5	4.5																																																																																																																																																				
중급기술자	1	2	1.5	4.5																																																																																																																																																				
초급기술자	2	-	3	5																																																																																																																																																				
(3) 축척 1/2,500				(일당)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종별</th> <th colspan="4">인원수</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2">외업</th> <th colspan="2">내업</th> </tr> <tr> <th>단범</th> <th>멀티범</th> <th>단범</th> <th>멀티범</th> </tr> </thead> <tbody> <tr> <td>특급기술자</td> <td>1</td> <td>1</td> <td>-</td> <td>1</td> <td rowspan="4"></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td> <td>1</td> <td>2</td> <td>5</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1</td> <td>2</td> <td>2</td> <td>5</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2</td> <td>-</td> <td>4</td> <td>5</td> </tr> </tbody> </table>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범	멀티범	단범	멀티범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2	5	중급기술자	1	2	2	5	초급기술자	2	-	4	5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범	멀티범	단범	멀티범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2	5																																																																																																																																																				
중급기술자	1	2	2	5																																																																																																																																																				
초급기술자	2	-	4	5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17 수심측량 및 수중지 층탐사	보완	(4) 축척 1/1,000 (일당)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범	멀티범	단범		멀티범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3		5	
		중급기술자	1	2	3		6	
		초급기술자	2		6		5	
		(5) 축척 및 축선 간격별 1일당 능률					(2) 축척 및 축선 간격별 1일당 능률	
		축척	피치(m)	능률(km)			비고	
		단범	멀티범					
1/10,000	100	21.6	37.2					
	50	18.0	29.6					
1/5,000	100	21.6	37.2					
	50	18.0	29.6					
	25	16.0	22.4					
1/2,500	50	18.0	29.6					
	25	16.0	22.4					
1/1,000	10	10.0	18.4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4 수치지도작성 5. 도면제작편집 다. 자동 지도제작	신설	< 신 설 >		다. 자동 지도제작 측척별시간당 작업량 (단위 : km ²)																
				<table border="1"> <thead> <tr> <th>측척</th> <th>1/5,000</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시간당작업량</td> <td>1.27</td> <td></td> </tr> </tbody> </table>	측척	1/5,000	비고	1시간당작업량	1.27											
측척	1/5,000	비고																		
1시간당작업량	1.27																			
				[주] ① 자동 지도제작 이라 함은 수치지도 Ver 2.0을 이용하여 수치지도 Ver 2.0의 자료형태(NGI format)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Ver2.0을 이용한 1/5,000도면제작 편집 시 적용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지형종류</th> <th>시가지</th> <th>교외지</th> <th>농경지</th> <th>구릉지</th> <th>산악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 수</td> <td>1.16</td> <td>1.11</td> <td>1.00</td> <td>1.00</td> <td>0.80</td> <td></td> </tr> </tbody> </table>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 수	1.16	1.11	1.00	1.00	0.80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 수	1.16	1.11	1.00	1.00	0.80															
				⑤ 편집작업의 편성인원은 “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⑥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면제작편집파일 ㉡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설계에]																
				① 설계제원 ㉠ 도면제작편집면적 : 586km ² (1/5,000, 100도엽) ㉡ 지도발행측척 : 1/5,000 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40%, 교외지 2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고 급 기술자</th> <th>정 보 처리기사</th> <th>중 급 기능사</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5,000지형도 자동지도제작</td> <td>0.06인</td> <td>0.06인</td> <td>0.63인</td> <td>6.1km²/(1.27km²/시간×8시간)× (0.4×1.16+0.25×1.11+0.15×1.0+0.2×0.8)=0.63일</td> </tr> </tbody> </table>	구 분	고 급 기술자	정 보 처리기사	중 급 기능사	비고	1/5,000지형도 자동지도제작	0.06인	0.06인	0.63인	6.1km ² /(1.27km ² /시간×8시간)× (0.4×1.16+0.25×1.11+0.15×1.0+0.2×0.8)=0.63일						
구 분	고 급 기술자	정 보 처리기사	중 급 기능사	비고																
1/5,000지형도 자동지도제작	0.06인	0.06인	0.63인	6.1km ² /(1.27km ² /시간×8시간)× (0.4×1.16+0.25×1.11+0.15×1.0+0.2×0.8)=0.63일																
				㉡ 기계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상각비</th> <th>유지보수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컴퓨터</td> <td>0.63일</td> <td>0.63일</td> <td>S/W포함</td> </tr> </tbody> </table>	구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고	컴퓨터	0.63일	0.63일	S/W포함								
구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고																	
컴퓨터	0.63일	0.63일	S/W포함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4 수치지도작성 6. 구조화편집	보완	21-24 수치지도작성 21-24 6.구조화편집 (생 략) <신 설>		21-24 수치지도작성 21-24 6.구조화편집 <u>가. 수치지형도</u> (현행과 같음) <u>나. 수치지형도(Ver2.0)</u> (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 (단위 : km ²)																
				<table border="1"> <thead> <tr> <th>측 척</th> <th>1/1,000</th> <th>1/5,000</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시간당작업량</td> <td>0.0107</td> <td>0.174</td> <td></td> </tr> </tbody> </table>	측 척	1/1,000	1/5,000	비 고	1시간당작업량	0.0107	0.174									
측 척	1/1,000	1/5,000	비 고																	
1시간당작업량	0.0107	0.174																		
				<p>[주] ① 수치지형도 Ver 2.0 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 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21-24 수치지형도 작성“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p> <p>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형계수</th> <th>시가지</th> <th>교외지</th> <th>농경지</th> <th>구릉지</th> <th>산악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증감계수</td> <td>0.3</td> <td>0.6</td> <td>1.0</td> <td>1.5</td> <td>6.0</td> <td></td> </tr> </tbody> </table>	지형계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증감계수	0.3	0.6	1.0	1.5	6.0			
지형계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증감계수	0.3	0.6	1.0	1.5	6.0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고급 기술자</th> <th>중급 기술자</th> <th>초급기술자 (정보처리)</th> <th>중급기능사 (지도제작)</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참여비율 (%)</td> <td>10</td> <td>40</td> <td>20</td> <td>30</td> <td>100</td> </tr> </tbody> </table>	구 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기술자 (정보처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계	참여비율 (%)	10	40	20	30	100				
구 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기술자 (정보처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계															
참여비율 (%)	10	40	20	30	100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1/1,000,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4 수치지도작성 6. 구조화편집	보완				<p>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p>㉞ 구조화편집 성과 파일</p> <p>㉟ 수치지형도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p> <p>[설계에]</p> <p>① 설계제원</p> <p>㉞ 구조화편집 면적 : 0.24km²</p> <p>㉟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p> <p>㊱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p> <p>② 설계</p> <p>㉞ 인건비</p> <table border="1" data-bbox="1193 592 1960 818"> <thead> <tr> <th>구분</th> <th>고 급 기술자</th> <th>중 급 기술자</th> <th>초 급 기술자</th> <th>중 급 기능사</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구조화 편집</td> <td>6.21×0.1= 0.621</td> <td>6.21×0.4= 2.484</td> <td>6.21×0.2= 1.242</td> <td>6.21×0.3= 1.863</td> <td>0.24km²/(0.0107km²/ 시간×8시간)×(0.6÷ 0.3+0.05÷0.6+0.15÷ 1.5+0.2÷6.0)=6.21일</td> </tr> </tbody> </table> <p>㉞ 기계비</p> <table border="1" data-bbox="1193 917 1960 1011"> <thead> <tr> <th>구분</th> <th>상각비</th> <th>유지보수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컴퓨터</td> <td>6.21일</td> <td>6.21일</td> <td>S/W포함</td> </tr> </tbody> </table> <p>(2) 신규 작업</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km²)</p> <table border="1" data-bbox="1193 1190 1942 1272"> <thead> <tr> <th>축척</th> <th>1/1,000</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시간당 작업량</td> <td>0.004</td> <td></td> </tr> </tbody> </table> <p>[주] ① 본 품은 수치지형도 Ver2.0 제작시 정위치편집과 구조화편집을 포함한 작업을 말한다.</p> <p>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21-24 수치지도작성 “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p>	구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 급 기능사	비 고	구조화 편집	6.21×0.1= 0.621	6.21×0.4= 2.484	6.21×0.2= 1.242	6.21×0.3= 1.863	0.24km ² /(0.0107km ² / 시간×8시간)×(0.6÷ 0.3+0.05÷0.6+0.15÷ 1.5+0.2÷6.0)=6.21일	구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고	컴퓨터	6.21일	6.21일	S/W포함	축척	1/1,000	비고	1시간당 작업량	0.004		
구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 급 기능사	비 고																											
구조화 편집	6.21×0.1= 0.621	6.21×0.4= 2.484	6.21×0.2= 1.242	6.21×0.3= 1.863	0.24km ² /(0.0107km ² / 시간×8시간)×(0.6÷ 0.3+0.05÷0.6+0.15÷ 1.5+0.2÷6.0)=6.21일																											
구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고																													
컴퓨터	6.21일	6.21일	S/W포함																													
축척	1/1,000	비고																														
1시간당 작업량	0.004																															
		< 신 설 >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4 수치지도작성 6. 구조화편집	보완				<p>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6” 구조화편집 “나” 수치지형도 Ver 2.0(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p> <p>④ 작업반의 편성은 “6” 구조화편집 “나.” 수치지형도 Ver 2.0(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p> <p>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p> <p>⑥ 본 품은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p> <p>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p> <p>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p>㉠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 성과 파일</p> <p>㉡ 수치지형도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p> <p>[설계에]</p> <p>① 설계제원</p> <p>㉠ 편집면적 : 0.24km²</p> <p>㉡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p> <p>㉢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p> <p>② 설계</p> <p>㉠ 인건비</p> <table border="1" data-bbox="1182 1018 1953 1241"> <thead> <tr> <th>구 분</th> <th>고 급 기술자</th> <th>중 급 기술자</th> <th>초 급 기술자</th> <th>중 급 기능사</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구조화 편집</td> <td>16.62×0.1=1.662</td> <td>16.62×0.4=6.648</td> <td>16.62×0.2=3.324</td> <td>16.62×0.3=4.986</td> <td>0.24km²/(0.004km²/시간×8시간)×(0.6÷0.3+0.05÷0.6+0.15÷1.5+0.2÷6.0)=16.62일</td> </tr> </tbody> </table> <p>㉡ 기계비</p> <table border="1" data-bbox="1182 1337 1953 1407"> <thead> <tr> <th>구분</th> <th>상각비</th> <th>유지보수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컴퓨터</td> <td>16.62일</td> <td>16.62일</td> <td>S/W포함</td> </tr> </tbody> </table>	구 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 급 기능사	비고	구조화 편집	16.62×0.1=1.662	16.62×0.4=6.648	16.62×0.2=3.324	16.62×0.3=4.986	0.24km ² /(0.004km ² /시간×8시간)×(0.6÷0.3+0.05÷0.6+0.15÷1.5+0.2÷6.0)=16.62일	구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고	컴퓨터	16.62일	16.62일	S/W포함	
구 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 급 기능사	비고																					
구조화 편집	16.62×0.1=1.662	16.62×0.4=6.648	16.62×0.2=3.324	16.62×0.3=4.986	0.24km ² /(0.004km ² /시간×8시간)×(0.6÷0.3+0.05÷0.6+0.15÷1.5+0.2÷6.0)=16.62일																					
구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고																							
컴퓨터	16.62일	16.62일	S/W포함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9-1 신규등록 측량(도해)	보완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적 요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11		1						0.11				자료조사	(0.19)		1							(0.19)																																														
		등 사	0.17		1						0.17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소도작성	0.12			1					0.12			등 사	(0.12)		1							(0.12)																																															
		실지측량	(1.09)	1		1	1		(1.09)		(1.09)	(1.09)		준 비 도	작성	(0.10)			1					(0.10)																																															
		원도작성	0.12		1						0.12			확인	(0.03)		1							(0.03)																																															
		면적측정	0.13			1					0.13			실 지 측 량	0.73	1		1	1				0.73		0.73	0.73				()는 내업 임																																									
		조서작성	0.03			1					0.03			성 과 설 명	0.08	1							0.08																																																
		신청서작성	0.03			1					0.03			결 과 도 작 성	(0.17)		1						(0.17)																																																
		이동통지도작성	0.03			1					0.03			면 적 측 정	(0.08)			1					(0.08)																																																
		점 검	0.03	1					0.03		0.03			성 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성과인계	0.03		1						0.03			점 검	(0.10)	1							(0.10)																																																
		소 외업	(1.09)						(1.09)		(1.09)	(1.09)		성 과 인 계	(0.08)	1							(0.08)																																																
		계 내업	0.80						0.03	0.43	0.34			소 외업	0.81								0.81		0.73	0.73																																													
		합 계	1.89						1.12	0.43	1.43	1.09		계 내업	(1.02)								(0.27)	(0.60)	(0.24)																																														
		합 계											합 계	1.83									1.08	0.60	0.97	0.73																																													
		<p>[주] ① 신규등록 측량이라함은 지적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p> <p>②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가산횟수</td> <td>0회</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이상</td> </tr> <tr> <td>구 분</td> <td>기준면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준면적계수</td> <td>0.0</td> <td>0.5</td> <td>0.9</td> <td>1.2</td> <td>1.4</td> <td>1.5</td> <td>1+0.1n</td> </tr> </table>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구 분	기준면적							기준면적계수	0.0	0.5	0.9	1.2	1.4	1.5	1+0.1n		<p>[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도해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p> <p>② 면적계수</p> <p>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가산횟수</td> <td>0회</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이상</td> </tr> <tr> <td>구 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able>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구 분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구 분	기준면적																																																																						
기준면적계수	0.0	0.5	0.9	1.2	1.4	1.5	1+0.1n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구 분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완	<p>③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축척지역별 구 분</td> <td>1/500, 1/600</td> <td>1/1,000, 1/1,200, 1/2,400</td> <td>1/3,000</td> <td>1/6,000</td> <td>적 요</td> </tr> <tr> <td>정 도 계 수</td> <td>0.00</td> <td>0.05</td> <td>0.27</td> <td>0.23</td> <td></td> </tr> </table>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0.27	0.23		<p>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축척지역별 구분</td> <td>1/500, 1/600</td> <td>1/1000, 1/1200, 1/2400</td> <td>1/3000</td> <td>1/6000</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able>		축척지역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0.27	0.23																						
		축척지역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p>④ 본 품은 군지역의 작업상 난이도를 기준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구 분 내 용</td> <td>군 지 역</td> <td>시 지 역</td> <td>구 지 역</td> <td>적 요</td> </tr> <tr> <td>난이도계수</td> <td>0.00</td> <td>0.30</td> <td>0.44</td> <td></td> </tr> </table>		구 분 내 용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이도계수	0.00	0.30	0.44		<p>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내 용 구 분</td> <td>군지역</td> <td>시지역</td> <td>구지역</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able>		내 용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구 분 내 용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이도계수	0.00	0.30	0.44																							
		내 용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p>⑤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p>㉑ 신규등록 측량원도 1부</p> <p>㉒ 지적도 등사도 1부</p> <p>㉓ 면적측정부 1부</p> <p>㉔ 이동지조서 1부</p> <p>㉕ 측량성과도 1부</p>		<p>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내용 구분</td> <td>50필지이하</td> <td>51-100필지</td> <td>101-500필지</td> <td>501-1000필지</td> <td>1000필지초과</td> </tr>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able>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p>⑥ 1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p> <p>⑦ 등록된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하며, 등록된 인접토지의 축척으로 측량한다.</p> <p>⑧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폼셈을 별도 가산한다.</p> <p>⑨ 도서를 등록하기 위하여 현지측량할 경우에는 도서측량에 필요한 기계경비 및 선박 대여료를 별도 계상한다.</p> <p>⑩ 기초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제 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 측량과 지적도근측량을 말한다.</p>		<p>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p>㉑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1부</p> <p>㉒ 지적도 등사도 1부</p> <p>㉓ 면적측정부 1부</p> <p>㉔ 이동지조서 1부</p> <p>㉕ 측량성과도 1부</p> <p>⑦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9-2 신규등록 측량 (수치)	신설			작업별	구분	일수	인 원 수											비고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1일당			합계					인부						
									지적 기능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38)		1						(0.38)							
							계 획 준 비	(0.14)	1	1					(0.14)	(0.14)							
							등 사	(0.16)		1						(0.16)							
							준비도	작 성	(0.13)			1							(0.13)				
								확 인	(0.05)		1						(0.05)						
							실 지 측 량	0.97	1		1	1			0.97		0.97		0.97				()는 내업 임
							성 과 설 명	0.11	1						0.11								
							결 과 도 작 성	(0.27)		1						(0.27)							
							면 적 측 정	(0.10)			1						(0.10)						
							성과도및조서작성	(0.10)			1						(0.10)						
							접 검	(0.17)	1						(0.17)								
							성 과 인 계	(0.10)	1						(0.10)								
							소 계	외 업	1.08							1.08			0.97	0.97			
								내 업	(1.60)							(0.41)	(1.00)		(0.33)				
							합 계	2.68							1.49	1.00	1.30		0.97				
							<p>[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p>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가산횟수 구 분</td> <td>0회</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이상</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able> <p>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군지역</td> <td>시지역</td> <td>구지역</td> </tr> <tr> <td>내 용</td> <td></td> <td></td> <td></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able> <p>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내용 구분</td> <td>50필지이하</td> <td>51-100필지</td> <td>101-500필지</td> <td>501-1000필지</td> <td>1000필지초과</td> </tr>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able> <p>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 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 <p>⑥ 기타사항 ·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p>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내 용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내 용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9-3 시가지구획정리 신 규등록 측량(수치)	신설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4.03)		1				(4.03)						
							계 획 준 비	(3.42)	1	1				(3.42)	(3.42)					
							현 장 조 사	4.82	1	1	1			4.82	4.82	4.82				
							등 사	(3.58)		1					(3.58)					
							지 구 계 준 비 도	작 성	(6.19)		1				(6.19)					
								확 인	(0.92)	1					(0.92)					
							가 구 점	측 량	13.22	1	1	1	1	13.22	13.22	13.22		13.22		
								계 산	(10.86)	1	1			(10.86)	(10.86)					
							필 계 점	측 량	9.18	1	1	1	1	9.18	9.18	9.18		9.18		
								계 산	(9.44)	1	1			(9.44)	(9.44)					
							중 심 점 계 산	(8.40)	1	1				(8.40)	(8.40)					
							말 박 기	계 산	(10.89)	1	1			(10.89)	(10.89)					
								측 량	21.39	1	1	1	1	21.39	21.39	21.39		21.39		
							좌 표 면 적 계 산	(8.43)	1	1				(8.43)	(8.43)					
							결 과 도 작 성	(3.10)		1	1				(3.10)	(3.10)				
							성 과 작 성	(18.22)		1	1				(18.22)	(18.22)				
							조 서 작 성	(5.88)		1	1				(5.88)	(5.88)				
							점 검	(5.01)	1					(5.01)						
							성 과 인 계	(2.58)	1					(2.58)						
							소 계	외 업	48.61					48.61	48.61	48.61		43.79		
								내 업	(100.95)					(59.95)	(92.44)	(27.20)				
							합 계	149.56						108.56	141.05	75.81		43.79		
							<p>[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시가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p> <p>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p>													
							내용 구분	20만㎡ 이하	20만㎡ - 50만㎡	50만㎡ - 100만㎡	100만㎡ - 200만㎡	200만㎡ - 300만㎡	300만㎡ 이상							
계수	1.0	0.9	0.8	0.7	0.6	0.5														

항목	구분	현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③ 필지가산계수 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를 50필지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200 379 2007 475"> <thead> <tr> <th>필지수</th> <th>50 이하</th> <th>51-100</th> <th>101-200</th> <th>201-300</th> <th>301-400</th> <th>401-500</th> <th>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05</td> <td>0.10</td> <td>0.15</td> <td>0.20</td> <td>0.25</td> <td>0.05×n</td> </tr> </tbody> </table> <p>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3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p>⑤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필지수	50 이하	5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필지수	50 이하	5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9-4 경지구획정리 신규 등록 측량(수치)	신설				인 원 수										비고					
					구 분 작업별	일수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3.40)		1	1				(3.40)	(3.40)						
					계 획 준 비	(2.63)	1	1				(2.63)	(2.63)							
					현 장 조 사	3.90	1	1				3.90	3.90							
					등 사	(6.00)		1	1				(6.00)	(6.00)						
					지 구 계 도 준 비	작 성	(7.83)	1	1	1	1		(7.83)	(7.83)		(7.83)	(7.83)			
						확 인	(1.05)	1					(1.05)							
					필 계 점	측 량	21.73	1	1	1	1		21.73	21.73		21.73	21.73			()는 내업 임
						계 산	(16.70)	1	1				(16.70)	(16.70)						
					좌표면적계산	(15.75)	1	1				(15.75)	(15.75)							
					결과도 작성	(3.03)	1	1	1	1		(3.03)	(3.03)	(3.03)		(3.03)				
					성 과 작 성	(18.13)	1	1	1	1		(18.13)	(18.13)	(18.13)		(18.13)				
					조 서 작 성	(5.88)		1	1	1			(5.88)	(5.88)		(5.88)				
					검 검	(5.65)	1					(5.65)								
					성 과 인 계	(1.40)	1					(1.40)								
					소 계	외 업	25.63						25.63	25.63		21.73	21.73			
						내 업	(87.45)						(64.34)	(79.35)		(44.27)	(34.87)			
					합 계	113.08							89.97	104.95		66.00	56.60			
					<p>[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p> <p>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p>															
내 용 구 분		100만㎡ 이하	100만㎡ -300만㎡	300만㎡ -500만㎡	500만㎡ -800만㎡	800만㎡ -1000만㎡	1000만㎡ 이상													
계 수		1.0	0.9	0.8	0.7	0.6	0.5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10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항목	구분	현										개										정 (안)	비 고																						
21-30-1 등록전환 측량(도해)	보완	인 원 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계						
작업별	일 수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비 고																							
자료조사	0.10		1					0.10																																					
등 사	0.11		1					0.11										(0.06)	(0.06)																										
소도작성	0.13			1					0.13			0.13		0.13																															
실지측량	(1.33)	1		1	1		(1.33)		(1.33)		(1.33)																																		
축 도	0.10		1					0.10																																					
신 도	0.09		1					0.09																																					
원도작성	0.10		1				(0.10)																																						
면적측정	0.14			1					0.14																																				
조서작성	0.04			1					0.04																																				
신청서작성	0.03			1					0.03																																				
이동통지도작성	0.04			1					0.04																																				
점 검	0.04	1						0.04																																					
성과인계	0.17		1					0.17																																					
소 외업	(1.33)						(1.33)		(1.33)		(1.33)																																		
내업	1.09							0.04	0.67	0.38																																			
합 계	2.42						1.37	0.67	1.71	1.33																																			
<p>[주] ① 등록전환 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p> <p>② 본 품은 1필지당 3,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가산횟수</td> <td>0회</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이상</td> </tr> <tr> <td>구 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준면적계수</td> <td>0.0</td> <td>0.5</td> <td>0.9</td> <td>1.2</td> <td>1.4</td> <td>1.5</td> <td>1+0.1n</td> </tr> </table>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구 분								기준면적계수	0.0	0.5	0.9	1.2	1.4	1.5	1+0.1n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구 분																																													
기준면적계수	0.0	0.5	0.9	1.2	1.4	1.5	1+0.1n																																						
<p>[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p> <p>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가산횟수</td> <td>0회</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이상</td> </tr> <tr> <td>구 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able>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구 분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구 분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완	<p>③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축척지역별 구 분</td> <td>1/500, 1/600</td> <td>1/1,000, 1/1,200 1/2,400</td> <td>적 요</td> </tr> <tr> <td>정 도 계 수</td> <td>0.00</td> <td>0.05</td> </tr> </table> <p>④ 본 품은 군지역의 작업상 난이도를 기준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구 분 내 용</td> <td>군 지 역</td> <td>시 지 역</td> <td>구 지 역</td> <td>적 요</td> </tr> <tr> <td>난 이 도 계 수</td> <td>0.00</td> <td>0.30</td> <td>0.44</td> </tr> </table> <p>⑤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table border="0"> <tr> <td>㉓ 등록전환 측량원도</td> <td>1부</td> </tr> <tr> <td>㉔ 지적도 등사도</td> <td>1부</td> </tr> <tr> <td>㉕ 임야도 등사도</td> <td>1부</td> </tr> <tr> <td>㉖ 면적측정부</td> <td>1부</td> </tr> <tr> <td>㉗ 이동지조서</td> <td>3부</td> </tr> <tr> <td>㉘ 측량성과도</td> <td>1부</td> </tr> </table> <p>⑥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하며, 등록할 인접지의 축척으로 측량한다.</p> <p>⑦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p>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구 분 내 용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㉓ 등록전환 측량원도	1부	㉔ 지적도 등사도	1부	㉕ 임야도 등사도	1부	㉖ 면적측정부	1부	㉗ 이동지조서	3부	㉘ 측량성과도	1부	<p>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축척별 구 분</td> <td>1/500, 1/600</td> <td>1/1000, 1/1200, /2400</td> </tr> <tr> <td>계 수</td> <td>0.00</td> <td>0.23</td> </tr> </table> <p>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구 분 내 용</td> <td>군지역</td> <td>시지역</td> <td>구지역</td> </tr> <tr> <td>계 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able> <p>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내용 구분</td> <td>50필지이하</td> <td>51-100필지</td> <td>101-500필지</td> <td>501-1000필지</td> <td>1000필지초과</td> </tr> <tr> <td>계 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able> <p>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table border="0"> <tr> <td>㉓ 등록전환 측량결과도</td> <td>1부</td> </tr> <tr> <td>㉔ 지적도 등사도</td> <td>1부</td> </tr> <tr> <td>㉕ 임야도 등사도</td> <td>1부</td> </tr> <tr> <td>㉖ 면적측정부</td> <td>1부</td> </tr> <tr> <td>㉗ 이동지조서</td> <td>3부</td> </tr> <tr> <td>㉘ 측량성과도</td> <td>1부</td> </tr> </table> <p>⑦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p>	축척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2400	계 수	0.00	0.23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 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㉓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㉔ 지적도 등사도	1부	㉕ 임야도 등사도	1부	㉖ 면적측정부	1부	㉗ 이동지조서	3부	㉘ 측량성과도	1부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구 분 내 용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㉓ 등록전환 측량원도	1부																																																																					
㉔ 지적도 등사도	1부																																																																					
㉕ 임야도 등사도	1부																																																																					
㉖ 면적측정부	1부																																																																					
㉗ 이동지조서	3부																																																																					
㉘ 측량성과도	1부																																																																					
축척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2400																																																																				
	계 수	0.00	0.23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 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㉓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㉔ 지적도 등사도	1부																																																																					
㉕ 임야도 등사도	1부																																																																					
㉖ 면적측정부	1부																																																																					
㉗ 이동지조서	3부																																																																					
㉘ 측량성과도	1부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0-2 등록전환 측량(수치)	신설				인 원 수										비 고					
					구 분	일수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작업별															
					자 료 조 사	(0.27)		1					(0.27)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22)		1					(0.22)							
					준 비 도	작 성	(0.14)			1				(0.14)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46	1		1	1		0.46		0.46		0.46				()는 내업 임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21)		1					(0.21)							
					면 적 측 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10)			1					(0.10)						
					점 검	(0.10)	1					(0.10)								
					성 과 인 계	(0.05)	1					(0.05)								
					소 계	외 업	0.52						0.52			0.46	0.46			
						내 업	(1.27)						(0.21)	(0.82)		(0.30)				
					합 계	1.79						0.73	0.82	0.76		0.46				
					<p>[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p> <p>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 내용</th> <th>군지역</th> <th>시지역</th> <th>구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body> </table> <p>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 구분</th> <th>50필지이하</th> <th>51-100필지</th> <th>101-500필지</th> <th>501-1000필지</th> <th>1000필지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body> </table> <p>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p>⑥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p>	구분 \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구분 \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완	<p>④ 연속지 및 집단의 체감계수 : 분할후 1필지이상 50필지까지의 연속지 및 집단의 본 품을 적용하며 51필지 이상 연속지 또는 집단지인 때에는 본에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합산한 품으로 한다.</p> <table border="1"> <tr> <th>내 용 구 분</th> <th>분할후50 필지까지</th> <th>분할후50 필지초과</th> <th>분할후100 필지초과</th> <th>분할후500 필지초과</th> <th>분할후1000 필지초과</th> <th>적 요</th> </tr> <tr> <td>연속지분할</td> <td>1.0</td> <td>0.7</td> <td>0.6</td> <td>0.5</td> <td>0.4</td> <td></td> </tr> <tr> <td>집단지분할</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5</td> <td></td> </tr> </table>		내 용 구 분	분할후50 필지까지	분할후50 필지초과	분할후100 필지초과	분할후500 필지초과	분할후1000 필지초과	적 요	연속지분할	1.0	0.7	0.6	0.5	0.4		집단지분할	1.0	0.9	0.8	0.7	0.5		<p>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h>축척별 구분</th> <th>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able>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내 용 구 분	분할후50 필지까지	분할후50 필지초과	분할후100 필지초과	분할후500 필지초과	분할후1000 필지초과	적 요																													
		연속지분할	1.0	0.7	0.6	0.5	0.4																														
		집단지분할	1.0	0.9	0.8	0.7	0.5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p>⑤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h>축척지역별 구 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h>적 요</th> </tr> <tr> <td>정 도 계 수</td> <td>0.00</td> <td>0.05</td> <td>0.33</td> <td>0.23</td> <td></td> </tr> </table>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0.33	0.23		<p>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h>구 분 내 용</th> <th>군지역</th> <th>시지역</th> <th>구지역</th> </tr> <tr> <td>계 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able>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 수	0.00	0.40	0.54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0.33	0.23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 수	0.00	0.40	0.54																																		
<p>⑥ 본 품은 군지역의 작업상 난이도를 기준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h>구 분 내 용</th> <th>군 지역</th> <th>시 지역</th> <th>구 지역</th> <th>적 요</th> </tr> <tr> <td>난 이 도 계 수</td> <td>0.00</td> <td>0.30</td> <td>0.44</td> <td></td> </tr> </table>		구 분 내 용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p>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h>내 용 구분</th> <th>50필지이하</th> <th>51-100필지</th> <th>101-500필지</th> <th>501-1000필지</th> <th>1000필지초과</th> </tr>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able>		내 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구 분 내 용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내 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p>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측량원도 1부 ㉡ 지적도 또는 입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p>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입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p>⑧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하며, 분할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측량한다.</p>		<p>⑦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p>																																			
<p>⑨ 면적을 지정하여 분할측량할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에 80% 상당액을 가산한다.</p>																																					
<p>⑩ 연속지 분할측량이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도로, 하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제방 및 기구계 분할측량지를 말한다.</p>																																					
<p>⑪ 집단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접속 집단된 측량지를 말한다.</p>																																					
<p>⑫ 소관청이 다른 때에는 소관청별로 품을 계상한다.</p>																																					
<p>⑬ 작업상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 품을 가산한다.</p>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완		④ 연속지 및 집단지의 체감계수 : 분할후 1필지이상 50필지까지의 연속지 및 집단지의 본 품을 적용하며 51필지 이상 연속지 또는 집단지인 때에는 본에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합산한 품으로 한다.	<table border="1"> <tr> <th>내 용 \ 구 분</th> <th>분할후50필지까지</th> <th>분할후50필지초과</th> <th>분할후100필지초과</th> <th>분할후500필지초과</th> <th>분할후1000필지초과</th> <th>적 요</th> </tr> <tr> <td>연속지분할</td> <td>1.0</td> <td>0.7</td> <td>0.6</td> <td>0.5</td> <td>0.4</td> <td></td> </tr> <tr> <td>집단지분할</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5</td> <td></td> </tr> </table>	내 용 \ 구 분	분할후50필지까지	분할후50필지초과	분할후100필지초과	분할후500필지초과	분할후1000필지초과	적 요	연속지분할	1.0	0.7	0.6	0.5	0.4		집단지분할	1.0	0.9	0.8	0.7	0.5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균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border="1"> <tr> <th>내 용 \ 구 분</th> <th>균지역</th> <th>시지역</th> <th>구지역</th> </tr>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able>	내 용 \ 구 분	균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 용 \ 구 분	분할후50필지까지	분할후50필지초과	분할후100필지초과	분할후500필지초과	분할후1000필지초과	적 요																											
		연속지분할	1.0	0.7	0.6	0.5	0.4																												
		집단지분할	1.0	0.9	0.8	0.7	0.5																												
		내 용 \ 구 분	균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⑤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border="1"> <tr> <th>축척지역별 \ 구 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h>적 요</th> </tr> <tr> <td>정 도 계 수</td> <td>0.00</td> <td>0.05</td> <td>0.33</td> <td>0.23</td> <td></td> </tr> </table>	축척지역별 \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0.33	0.23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border="1"> <tr> <th>내 용 \ 구 분</th> <th>50필지이하</th> <th>51-100필지</th> <th>101-500필지</th> <th>501-1000필지</th> <th>1000필지초과</th> </tr>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able>	내 용 \ 구 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축척지역별 \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0.33	0.23																													
		내 용 \ 구 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본 품은 균지역의 작업상 난이도를 기준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border="1"> <tr> <th>내 용 \ 구 분</th> <th>균 지 역</th> <th>시 지 역</th> <th>구 지 역</th> <th>적 요</th> </tr> <tr> <td>난 이 도 계 수</td> <td>0.00</td> <td>0.30</td> <td>0.44</td> <td></td> </tr> </table>	내 용 \ 구 분	균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내 용 \ 구 분	균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측량원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⑧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하며, 분할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측량한다.				⑥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⑨ 면적을 지정하여 분할측량할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에 80% 상당액을 가산한다.																																			
⑩ 연속지 분할측량이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도로, 하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제방 및 기구계 분할측량지를 말한다.																																			
⑪ 집단이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접속 집단된 측량지를 말한다.																																			
⑫ 소관청이 다른 때에는 소관청별로 품을 계상한다.																																			
⑬ 작업상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 품을 가산한다.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보완	<p>④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396 336 1140 432"> <tr> <th>축척지역별 구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h>적요</th> </tr> <tr> <td>정도계수</td> <td>0.00</td> <td>0.05</td> <td>0.33</td> <td>0.23</td> <td></td> </tr> </table> <p>⑤ 본 품은 군지역의 작업상 난이도를 기준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가산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396 531 1140 627"> <tr> <th>구분 내용</th> <th>군 지역</th> <th>시 지역</th> <th>구 지역</th> <th>적요</th> </tr> <tr> <td>난이도계수</td> <td>0.00</td> <td>0.30</td> <td>0.44</td> <td></td> </tr> </table> <p>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경계복원 측량원도 1부 ㉕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㉖ 측량성과도 1부 <p>⑦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하며, 등록된 동일한 축척으로 측량한다.</p> <p>⑧ 좌표라 함은 지적법 제2조 제8호에 의하여 지초점 또는 경계상 굴곡점의 위치를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p> <p>⑨ 이 품의 측량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이 품에 의한 측량비에 100%를 가산한다.</p> <p>⑩ 경계정정측량을 할 경우에는 본 품을 적용한다.</p> <p>⑪ 경계분쟁으로 인하여 현장에 2회 이상 출장할 경우에는 측량에 따른 품을 별도로 가산하여 적용한다.</p> <p>⑫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점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경우에는 이 품에 80%를 가산한 품으로 한다.</p> <p>⑬ 작업상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 품을 별도 가산한다.</p>	축척지역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요	정도계수	0.00	0.05	0.33	0.23		구분 내용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	적요	난이도계수	0.00	0.30	0.44		<p>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84 371 1977 477"> <tr> <th>축척별 구분</th> <th>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able> <p>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84 608 1977 713"> <tr> <th>구분 내용</th> <th>군지역</th> <th>시지역</th> <th>구지역</th> </tr>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able> <p>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84 879 1977 984"> <tr> <th>내용 구분</th> <th>50필지이하</th> <th>51-100필지</th> <th>101-500필지</th> <th>501-1000필지</th> <th>1000필지초과</th> </tr>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able> <p>⑥ 축점계수 본 품은 5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84 1118 1977 1224"> <tr> <th>내용 구분</th> <th>5점이하</th> <th>6점-10점</th> <th>11점-15점</th> <th>16점-20점</th> <th>21점-25점</th> <th>26점-30점</th> <th>30점초과시 매5점마다</th> </tr> <tr> <td>계수</td> <td>0.00</td> <td>0.05</td> <td>0.10</td> <td>0.15</td> <td>0.20</td> <td>0.25</td> <td>0.05×n</td> </tr> </table> <p>⑦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㉕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㉖ 측량성과도 1부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구분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축척지역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요																																																																			
정도계수	0.00	0.05	0.33	0.23																																																																				
구분 내용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	적요																																																																				
난이도계수	0.00	0.30	0.44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구분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항목	구분	현행	개정 (안)	비고
	보완		⑧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2-2 경계복원 측량(수치)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일수</th> <th colspan="10">인 원 수</th> <th rowspan="3">비 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작업별</td> <td></td> </tr> <tr> <td>자 료 조 사</td> <td>(0.25)</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 획 준 비</td> <td>(0.06)</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등 사</td> <td>(0.07)</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준 비 도</td> <td>작 성</td> <td>(0.10)</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0)</td> <td></td> <td></td> <td></td> </tr> <tr> <td>확 인</td> <td>(0.06)</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실 지 측 량</td> <td>0.78</td> <td>1</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0.78</td> <td></td> <td>0.78</td> <td>0.78</td> <td></td> </tr> <tr> <td>성 과 설 명</td> <td>0.06</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결 과 도 작 성</td> <td>(0.14)</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4)</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과도및조서작성</td> <td>(0.05)</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5)</td> <td></td> <td></td> </tr> <tr> <td>점 검</td> <td>(0.06)</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 인 계</td> <td>(0.06)</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소 계</td> <td>외 업</td> <td>0.8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84</td> <td></td> <td>0.78</td> <td>0.78</td> <td></td> </tr> <tr> <td>내 업</td> <td>(0.8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8)</td> <td>(0.58)</td> <td>(0.15)</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1.6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02</td> <td>0.58</td> <td>0.93</td> <td>0.78</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작업별															자 료 조 사	(0.25)		1							(0.25)					계 획 준 비	(0.06)	1							(0.06)						등 사	(0.07)		1							(0.07)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78	1		1	1				0.78		0.78	0.78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4)		1							(0.14)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 검	(0.06)	1							(0.06)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 계	외 업	0.84								0.84		0.78	0.78		내 업	(0.85)								(0.18)	(0.58)	(0.15)			합 계	1.69								1.02	0.58	0.93	0.78		()는 내업 임
				구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작업별																																																																																																																																																																																																																																																																	
				자 료 조 사	(0.25)		1							(0.25)																																																																																																																																																																																																																																																							
				계 획 준 비	(0.06)	1							(0.06)																																																																																																																																																																																																																																																								
				등 사	(0.07)		1							(0.07)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78	1		1	1				0.78		0.78	0.78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4)		1							(0.14)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 검	(0.06)	1							(0.06)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 계	외 업	0.84								0.84		0.78	0.78																																																																																																																																																																																																																																																				
					내 업	(0.85)								(0.18)	(0.58)	(0.15)																																																																																																																																																																																																																																																					
				합 계	1.69								1.02	0.58	0.93	0.78																																																																																																																																																																																																																																																					
				<p>[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필지를 지적법 제32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 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p> <p>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산횟수 구 분</th> <th>0회</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body> </table>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군지역</th> <th>시지역</th> <th>구지역</th> </tr> </thead> <tbody> <tr> <td>내용</td> <td></td> <td></td> <td></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body> </table> <p>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구분</th> <th>50필지이하</th> <th>51-100필지</th> <th>101-500필지</th> <th>501-1000필지</th> <th>1000필지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body> </table> <p>⑤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구분</th> <th>5점이하</th> <th>6점-10점</th> <th>11점-15점</th> <th>16점-20점</th> <th>21점-25점</th> <th>26점-30점</th> <th>30점초과시 매5점마다</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td> <td>0.00</td> <td>0.05</td> <td>0.10</td> <td>0.15</td> <td>0.20</td> <td>0.25</td> <td>0.05×n</td> </tr> </tbody> </table> <p>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㉕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㉖ 측량성과도 1부 <p>⑦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p>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내용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구분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내용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구분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항목	구분	현										개										정 (안)	비 고				
21-33 지적삼각측량	보완	인 원 수										인 원 수															
																								1일당			
	작업별	일수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적요	작업별	일수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비고	
	계획준비	0.60	1	1				0.60	0.60)는 외업임	자료 조사	(1.48)	1	1	1				(1.48)	(1.48)	(1.48)			()는 내업 임
	답 사	1.78)	1	1	1			1.78)	1.78)	1.78)				계획 준비	(1.13)	1	1					(1.13)	(1.13)				
	선 점	1.21)	1	1				1.21)	1.21)					답 사	2.78		1	1	1				2.78	2.78	2.78		
	거리측정													선 점	1.57	1	1	1				1.57	1.57	1.57			
	조 표	5.84)	1	1	1	1	5.84)	5.84	5.84)	5.84)	5.84)	5.84)		조 표	3.65		1	1	1	1			3.65	3.65	3.65	3.65	
	관 측	6.05)	1	1	1		6.05)	6.05	6.05)					관 측	3.74		1	1	1				3.74	3.74	3.74		
	계 산	4.22	1	1			4.22	4.22						계 산	(1.65)		1	1					(1.65)	(1.65)			
	성과정리	1.28	1	1			1.28	1.28						등 사	(1.48)			1						(1.48)			
	점 검	1.48	1				1.48							준비도	작 성 (1.74)				1						(1.74)		
	소 계	외업 14.88)					외업 14.88)	외업 14.88)						확 인 (0.26)	1							(0.26)					
	내업	7.58					7.58	6.10						기지부합여부확인	3.22		1	1	1				3.22	3.22	3.22		
	합 계	22.46					22.46	20.98						성 과 계 산 부 작 성 대 장 (1.70)				1						(0.70)			
														점 검 (0.78)	1							(0.78)					
														성 과 인 계 (0.44)		1							(0.44)				
													소 계	외업 17.22								1.57	14.96	14.96	13.39	3.65	
													내업 (11.14)									(3.65)	(6.18)	(5.31)	(1.74)		
													합 계	28.36								5.22	21.14	20.27	15.13	3.65	

[주] ① 지적삼각 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 기초측량이며 평면직각 중횡선 좌표로 산출한다.
 ② 본 품은 측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여점 3, 구점 7) 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지적삼각 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본 품으로 한다.
 ④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품의 50%를 적용한다. 단, 지적법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측량 실시에 따른 품이다.

항목	구분	현행	개정 (안)	비고																																		
	보완	<p>⑤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398 416 1142 547"> <thead> <tr> <th>표고명</th> <th>가산범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500m~1,000m</td> <td>20%</td> <td></td> </tr> <tr> <td>1,000m이상</td> <td>40%</td> <td></td> </tr> </tbody> </table> <p>⑥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p> <p>⑦ 별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p> <p>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p> <table data-bbox="398 715 1142 863"> <tbody> <tr> <td>㉗ 관측수부</td> <td>1부</td> </tr> <tr> <td>㉘ 지적삼각측량 계산부</td> <td>1부</td> </tr> <tr> <td>㉙ 지적삼각망도</td> <td>1부</td> </tr> <tr> <td>㉚ 점의조서</td> <td>1부</td> </tr> </tbody> </table> <p>⑨ 관측기계는 10초독 이상의 정밀기계를 사용하며, 광파기 및 전파기에 의할 때에는 광파기 전파기에 의한 품으로 한다.</p> <p>⑩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p>	표고명	가산범위	비고	500m~1,000m	20%		1,000m이상	40%		㉗ 관측수부	1부	㉘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㉙ 지적삼각망도	1부	㉚ 점의조서	1부	<p>② 표고계수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1189 456 1968 598"> <thead> <tr> <th>표고명</th> <th>가산범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500m~1,000m</td> <td>20%</td> <td></td> </tr> <tr> <td>1,000m이상</td> <td>40%</td> <td></td> </tr> </tbody> </table> <p>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p> <table data-bbox="1189 692 1968 834"> <tbody> <tr> <td>㉗ 관측부</td> <td>1부</td> </tr> <tr> <td>㉘ 지적삼각측량 계산부</td> <td>1부</td> </tr> <tr> <td>㉙ 지적삼각망도</td> <td>1부</td> </tr> <tr> <td>㉚ 점의조서</td> <td>1부</td> </tr> </tbody> </table> <p>④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품은 측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 별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표고명	가산범위	비고	500m~1,000m	20%		1,000m이상	40%		㉗ 관측부	1부	㉘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㉙ 지적삼각망도	1부	㉚ 점의조서	1부	
표고명	가산범위	비고																																				
500m~1,000m	20%																																					
1,000m이상	40%																																					
㉗ 관측수부	1부																																					
㉘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㉙ 지적삼각망도	1부																																					
㉚ 점의조서	1부																																					
표고명	가산범위	비고																																				
500m~1,000m	20%																																					
1,000m이상	40%																																					
㉗ 관측부	1부																																					
㉘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㉙ 지적삼각망도	1부																																					
㉚ 점의조서	1부																																					

항목	구분	현행	개정 (안)	비고																					
	보완	<p>⑥ 본 품은 방위각에 의한 2등 도선을 기준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다음의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394 336 1140 442"> <thead> <tr> <th>구분</th> <th>방위각법</th> <th>배각법</th> <th>적요</th> </tr> </thead> <tbody> <tr> <td>1등도선</td> <td>0.3</td> <td>0.40</td> <td></td> </tr> <tr> <td>2등도선</td> <td>0.00</td> <td>0.20</td> <td></td> </tr> </tbody> </table> <p>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p> <p>㉗ 관측수부 1부 ㉘ 지적도근측량계산부 1부 ㉙ 지적도근망도 1부</p> <p>⑧ 점간거리는 평균 50m~100m를 기준으로 하였다.</p> <p>⑨ 거리측정은 직접측정으로써 2회이상 측정정한 것이며, 광파기 또는 전파기를 상용할 때에는 전파기 또는 광파기에 의한 품으로 한다.</p> <p>⑩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p>	구분	방위각법	배각법	적요	1등도선	0.3	0.40		2등도선	0.00	0.20		<p>② 가산계수</p> <p>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82 383 1973 520"> <thead> <tr> <th>구분</th> <th>계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방위각법</td> <td>0.00</td> <td></td> </tr> <tr> <td>배각법</td> <td>0.37</td> <td></td> </tr> </tbody> </table> <p>③ 성과품</p> <p>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p> <p>㉗ 관측부 1부. ㉘ 도근측량부 1부. ㉙ 도근망도 1부.</p> <p>④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품은 측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 거리측정 등 관측기구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구분	계수	비고	방위각법	0.00		배각법	0.37		
구분	방위각법	배각법	적요																						
1등도선	0.3	0.40																							
2등도선	0.00	0.20																							
구분	계수	비고																							
방위각법	0.00																								
배각법	0.37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6-1 지적도작성	보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 작업별</th> <th rowspan="3">일 수</th> <th colspan="10">인 원 수</th> <th rowspan="3">적 요</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 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등 사</td> <td>0.11</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0.11</td> <td>0.1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 사</td> <td>0.09</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0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착 목</td> <td>0.35</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3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주 기</td> <td>0.22</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2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조수정</td> <td>0.09</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0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0.8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8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등 사	0.11	1	1				0.11	0.11							자 사	0.09		1					0.09							착 목	0.35		1					0.35							주 기	0.22		1					0.22							대조수정	0.09	1	1					0.09							합 계	0.86							0.86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 작업별</th> <th rowspan="3">일 수</th> <th colspan="10">인 원 수</th> <th rowspan="3">비 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 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데이터 확인</td> <td>(0.20)</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20)</td> <td>(0.2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료 변환</td> <td>(0.03)</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곽구획</td> <td>(0.02)</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면작성</td> <td>(0.25)</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조수정</td> <td>(0.10)</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10)</td> <td>(0.1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점 검</td> <td>(0.0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02)</td> <td>(0.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과인계</td> <td>(0.01)</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01)</td> <td>(0.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0.6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32)</td> <td>(0.6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데이터 확인	(0.20)	1	1					(0.20)	(0.20)						자료 변환	(0.03)		1						(0.03)						도곽구획	(0.02)		1						(0.02)						도면작성	(0.25)		1						(0.25)						대조수정	(0.10)	1	1					(0.10)	(0.10)						점 검	(0.02)	1	1					(0.02)	(0.02)						성과인계	(0.01)	1	1					(0.01)	(0.01)						합 계	(0.63)							(0.32)	(0.63)						
		구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등 사	0.11	1	1				0.11	0.11																																																																																																																																																																																																																																																																																				
자 사	0.09		1					0.09																																																																																																																																																																																																																																																																																				
착 목	0.35		1					0.35																																																																																																																																																																																																																																																																																				
주 기	0.22		1					0.22																																																																																																																																																																																																																																																																																				
대조수정	0.09	1	1					0.09																																																																																																																																																																																																																																																																																				
합 계	0.86							0.86																																																																																																																																																																																																																																																																																				
구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데이터 확인	(0.20)	1	1					(0.20)	(0.20)																																																																																																																																																																																																																																																																																			
자료 변환	(0.03)		1						(0.03)																																																																																																																																																																																																																																																																																			
도곽구획	(0.02)		1						(0.02)																																																																																																																																																																																																																																																																																			
도면작성	(0.25)		1						(0.25)																																																																																																																																																																																																																																																																																			
대조수정	(0.10)	1	1					(0.10)	(0.10)																																																																																																																																																																																																																																																																																			
점 검	(0.02)	1	1					(0.02)	(0.02)																																																																																																																																																																																																																																																																																			
성과인계	(0.01)	1	1					(0.01)	(0.01)																																																																																																																																																																																																																																																																																			
합 계	(0.63)							(0.32)	(0.63)																																																																																																																																																																																																																																																																																			
<p>[주] ① 지적도 작성은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도면과 임야복구 측량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p> <p>② 본 품은 지적도 1매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 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가산횟수(n)</th> <th>0회</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계 수</td> <td></td> <td>0.0</td> <td>0.5</td> <td>0.9</td> <td>1.2</td> <td>1.5</td> <td>1+0.1n</td> </tr> </tbody> </table> <p>③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축척지역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h>적 요</th> </tr> </thead> <tbody> <tr> <td>계 수</td> <td></td> <td>0.0</td> <td>0.05</td> <td>0.33</td> <td>0.23</td> <td></td> </tr> </tbody> </table> <p>④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p>㉠ 등 사 도 1부</p> <p>㉡ 지 적 도 1매</p> <p>⑤ 지적도를 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p> <p>⑥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p> <p>⑦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수공으로 한 것이다.</p>		구분	가산횟수(n)	0회	1	2	3	4	5이상	계 수		0.0	0.5	0.9	1.2	1.5	1+0.1n	구분	축척지역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계 수		0.0	0.05	0.33	0.23		<p>[주] ① 본 품은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도면과 임야복구측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때 작업 품이다.</p> <p>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척별 구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body> </table> <p>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도 1매. <p>④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적도를 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자동제도에 의한 것이다.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구분	가산횟수(n)	0회	1	2	3	4	5이상																																																																																																																																																																																																																																																																																					
계 수		0.0	0.5	0.9	1.2	1.5	1+0.1n																																																																																																																																																																																																																																																																																					
구분	축척지역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계 수		0.0	0.05	0.33	0.23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21-36-2 지적도 제작성	보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 작업별</th> <th rowspan="3">일 수</th> <th colspan="10">인원수</th> <th rowspan="3">적 요</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등사</td> <td>0.11</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0.11</td> <td>0.1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사</td> <td>0.15</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1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착목</td> <td>0.42</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4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주기</td> <td>0.28</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2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조수정</td> <td>0.11</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0.11</td> <td>0.1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1.0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2</td> <td>1.0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작업별	일 수	인원수										적 요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등사	0.11	1	1				0.11	0.11							자사	0.15		1					0.15							착목	0.42		1					0.42							주기	0.28		1					0.28							대조수정	0.11	1	1				0.11	0.11							합계	1.07						0.22	1.07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 작업별</th> <th rowspan="3">일 수</th> <th colspan="10">인원수</th> <th rowspan="3">비 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데이터확인</td> <td>(0.07)</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0.07)</td> <td>(0.0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면작성</td> <td>(0.34)</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3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조수정</td> <td>(0.10)</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0.10)</td> <td>(0.1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과작성</td> <td>(0.13)</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1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점검</td> <td>(0.0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0.02)</td> <td>(0.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과인계</td> <td>(0.0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0.02)</td> <td>(0.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0.6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1)</td> <td>(0.6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작업별	일 수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데이터확인	(0.07)	1	1				(0.07)	(0.07)							도면작성	(0.34)		1					(0.34)							대조수정	(0.10)	1	1				(0.10)	(0.10)						성과작성	(0.13)		1					(0.13)						점검	(0.02)	1	1				(0.02)	(0.02)						성과인계	(0.02)	1	1				(0.02)	(0.02)						합계	(0.68)						(0.21)	(0.68)						()는 내업 임
구분 작업별	일 수	인원수												적 요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등사	0.11	1	1				0.11	0.11																																																																																																																																																																																																																																																																														
자사	0.15		1					0.15																																																																																																																																																																																																																																																																														
착목	0.42		1					0.42																																																																																																																																																																																																																																																																														
주기	0.28		1					0.28																																																																																																																																																																																																																																																																														
대조수정	0.11	1	1				0.11	0.11																																																																																																																																																																																																																																																																														
합계	1.07						0.22	1.07																																																																																																																																																																																																																																																																														
구분 작업별	일 수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데이터확인	(0.07)	1	1				(0.07)	(0.07)																																																																																																																																																																																																																																																																														
도면작성	(0.34)		1					(0.34)																																																																																																																																																																																																																																																																														
대조수정	(0.10)	1	1				(0.10)	(0.10)																																																																																																																																																																																																																																																																														
성과작성	(0.13)		1					(0.13)																																																																																																																																																																																																																																																																														
점검	(0.02)	1	1				(0.02)	(0.02)																																																																																																																																																																																																																																																																														
성과인계	(0.02)	1	1				(0.02)	(0.02)																																																																																																																																																																																																																																																																														
합계	(0.68)						(0.21)	(0.68)																																																																																																																																																																																																																																																																														
<p>[주] ① 지적도 제작성은 지적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적공부가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경우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p> <p>② 본 품은 지적도 1매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산횟수(n)</th> <th>0회</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td> <td>0.5</td> <td>0.9</td> <td>1.2</td> <td>1.5</td> <td>1+0.1n</td> </tr> </tbody> </table> <p>③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척지역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h>적요</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05</td> <td>0.33</td> <td>0.23</td> <td></td> </tr> </tbody> </table> <p>④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p>㉠ 등사도 1부</p> <p>㉡ 지적도 1매</p> <p>⑤ 지적도를 제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p> <p>⑥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p> <p>⑦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제작성은 수공으로 한 것이다.</p>		가산횟수(n)	0회	1	2	3	4	5이상	계수	0.0	0.5	0.9	1.2	1.5	1+0.1n	축척지역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요	계수	0.00	0.05	0.33	0.23		<p>[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적공부가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경우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때 작업하는 품이다.</p> <p>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척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body> </table> <p>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p>· 지적도 1매.</p> <p>④ 기타사항</p> <p>·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p> <p>· 지적도를 제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p> <p>·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p> <p>·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제작성은 자동제도에기에 의한 것이다.</p>		축척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가산횟수(n)	0회	1	2	3	4	5이상																																																																																																																																																																																																																																																																																
계수	0.0	0.5	0.9	1.2	1.5	1+0.1n																																																																																																																																																																																																																																																																																
축척지역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요																																																																																																																																																																																																																																																																																	
계수	0.00	0.05	0.33	0.23																																																																																																																																																																																																																																																																																		
축척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6-3 도면작성	보완																																			
		구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구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지적 기능사	인부																							
		등 사	0.06		1						0.06																									
		착 목	0.09		1						0.09																									
		주 기	0.05		1						0.05																									
		대조수정	0.03		1						0.03																									
		합 계	0.23								0.23																									
				<p>[주] ①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인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p> <p>② 본 품은 1/600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가산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척지역별 구 분</th> <th>1/500 1/600</th> <th>1/1,000,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h>적 요</th> </tr> </thead> <tbody> <tr> <td>계 수</td> <td>0.00</td> <td>0.05</td> <td>0.33</td> <td>0.23</td> <td></td> </tr> </tbody> </table> <p>③ 특수용지를 사용하는 도면작성시에는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p> <p>④ 기준규격의 1/4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의 50%의 값을 곱한 품으로 한다.</p> <p>⑤ 성과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면 사본 1부</p>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계 수	0.00	0.05	0.33	0.23				<p>[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척별 구 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body> </table> <p>②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면 사본 1부</p> <p>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p>					축척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계 수	0.00	0.05	0.33	0.23																																
축척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7-1 지적현황 측량(도해)	신설				인 원 수											()는 내업임					
					작업별	일수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22)		1					(0.22)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12)		1						(0.12)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52	1		1	1		0.52		0.52	0.52						
					성 과 설 명	0.04	1					0.04									
					결 과 도 작 성	(0.12)		1					(0.12)								
					면 적 측 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4)			1					(0.04)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2)	1						(0.02)								
					소 계	외 업	0.56						0.56		0.52		0.52				
						내 업	(0.82)						(0.12)	(0.58)	(0.18)						
					합 계	1.38						0.68	0.58	0.70	0.52						
					<p>[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p> <p>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축척별 구분</td> <td>1/600</td> <td>1/1000, 1/1200, 1/2400</td> <td>1/3000</td> <td>1/6000</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able> <p>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군지역</td> <td>시지역</td> <td>구지역</td> </tr> <tr> <td>내 용</td> <td></td> <td></td> <td></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able> <p>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내 용 구분</td> <td>50필지이하</td> <td>51-100필지</td> <td>101-500필지</td> <td>501-1000필지</td> <td>1000필지초과</td> </tr>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able> <p>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 면적계산부 1부 <p>⑦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내 용				계수	0.00	0.40	0.54	내 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내 용																																								
계수	0.00	0.40	0.54																																					
내 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7-2 지적현황 측량(수치)	신설				인 원 수										비고					
					작업별	일수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26)		1				(0.26)								
					계 획 준 비	(0.07)	1	1				(0.07)	(0.07)							
					등 사	(0.09)		1					(0.09)							
					준 비 도	작 성	(0.11)				1							(0.11)		
						확 인	(0.07)		1					(0.07)						
					실 지 측 량	0.53	1		1	1		0.53		0.53		0.53				()는 내업임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9)		1					(0.19)							
					면 적 측 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7)				1							(0.04)			
					점 검	(0.05)	1					(0.05)								
					성 과 인 계	(0.05)	1					(0.05)								
					소 계	외 업	0.59						0.59			0.53	0.53			
						내 업	(1.00)						(0.17)	(0.68)			(0.19)			
					합 계	1.59						0.76	0.68	0.53		0.72				
					<p>[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p> <p>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항목	구분	현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98 379 2011 507"> <thead> <tr> <th data-bbox="1198 379 1400 448">구분 내용</th> <th data-bbox="1400 379 1606 448">군지역</th> <th data-bbox="1606 379 1807 448">시지역</th> <th data-bbox="1807 379 2011 448">구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198 448 1400 507">계수</td> <td data-bbox="1400 448 1606 507">0.00</td> <td data-bbox="1606 448 1807 507">0.40</td> <td data-bbox="1807 448 2011 507">0.54</td> </tr> </tbody> </table> <p>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98 676 2011 804"> <thead> <tr> <th data-bbox="1198 676 1285 745">내용 구분</th> <th data-bbox="1285 676 1426 745">50필지이하</th> <th data-bbox="1426 676 1547 745">51-100필지</th> <th data-bbox="1547 676 1688 745">101-500필지</th> <th data-bbox="1688 676 1839 745">501-1000필지</th> <th data-bbox="1839 676 2011 745">1000필지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198 745 1285 804">계수</td> <td data-bbox="1285 745 1426 804">1.00</td> <td data-bbox="1426 745 1547 804">0.97</td> <td data-bbox="1547 745 1688 804">0.91</td> <td data-bbox="1688 745 1839 804">0.84</td> <td data-bbox="1839 745 2011 804">0.76</td> </tr> </tbody> </table> <p>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㉕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㉖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㉗ 좌표면적계산부 1부 <p>⑥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8-1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지구계점)	신설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합 계					비 고			
						1일당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3.33)	1	1	1			(3.33)	(3.33)	(3.33)						
				계 획 준 비	(0.93)	1	1				(0.93)	(0.93)							
				현 장 조 사	0.70	1	1	1			0.70	0.70	0.70						
				등 사	(2.33)	1	1	1			(2.33)	(2.33)	(2.33)						
				준비도	작 성	(2.95)	1	1	1			(2.95)	(2.95)	(2.95)					
					확 인	(0.82)	1					(0.82)							()는 내업임
				지구계 측량	14.63	1	1	1	1		14.63	14.63	14.63	14.63					
				예정면적산출	(1.45)	1	1	1			(1.45)	(1.45)	(1.45)						
				예정결과도작성	(3.89)	1	1	1			(3.89)	(3.89)	(3.89)						
				성 과 작 성	(9.87)	1	1	1			(9.87)	(9.87)	(9.87)						
				점 검	(0.96)	1					(0.96)								
				성 과 인 계	(1.19)	1					(1.19)								
				소 계	외 업	15.33						15.33	15.33	15.33		14.63			
내 업	(27.72)							(27.72)	(24.75)	(23.82)									
합 계	43.05						43.05	40.08	39.15	14.63									
<p>[주] ① 본 품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p> <p>② 면적계수</p> <p>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p>																			
		20만㎡ 이하	20만㎡ - 50만㎡	50만㎡ - 100만㎡	100만㎡ - 200만㎡	200만㎡ - 300만㎡	300만㎡ 이상												
		1.0	0.9	0.8	0.7	0.6	0.5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③ 성과작성품</p> <p>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p>①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p> <p>②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1부</p> <p>③ 지구계 예정도(1/500 또는 1/1000) 1부</p> <p>④ 지구계 예정종합도 1부</p> <p>※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p> <p>④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를 적용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8-2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전체지구)	신설			인 원 수											비고					
				구 분 작업별	일 수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5.33)	1	1	1			(5.33)	(5.33)	(5.33)							
				계 획 준 비	(1.68)	1	1				(1.68)	(1.68)								
				현 장 조 사	2.19	1	1	1			2.19	2.19	2.19							
				등 사	(3.31)	1	1	1			(3.31)	(3.31)	(3.31)							
				준 비 도	작 성	(5.26)	1	1	1			(5.26)	(5.26)	(5.26)						
					확 인	(0.62)	1					(0.62)								
				지구계 측량	20.83	1	1	1	1		20.83	20.83	20.83	20.83						
				중심점 측 량	계 산	(31.04)	1	1	1			(31.04)	(31.04)	(31.04)						
					말박기	10.77	1	1	1	1		10.77	10.77	10.77		10.77				
				가구점 측 량	계 산	(23.85)	1	1	1			(23.85)	(23.85)	(23.85)						
					말박기	9.62	1	1	1	1		9.62	9.62	9.62		9.62				
				필계점 측 량	계 산	(19.36)	1	1	1			(19.36)	(19.36)	(19.36)						
					말박기	8.08	1	1	1	1		8.08	8.08	8.08		8.08				
				예정면적산출	(10.21)	1	1	1			(10.21)	(10.21)	(10.21)							
				예정결과도작성	(12.03)	1	1	1			(12.03)	(12.03)	(12.03)							
				성 과 작 성	(32.43)	1	1	1			(32.43)	(32.43)	(32.43)							
				점 검	(3.59)	1					(3.59)									
				성 과 인 계	(2.03)	1					(2.03)									
				소 계	외 업	51.49						51.49	51.49	51.49		49.30				
					내 업	(150.74)						(150.74)	(144.50)	(142.82)						
합 계	202.23						202.23	195.99	194.31	49.30										
[주] ① 본 품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전체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																				

항목	구분	현행	개정 (안)	비고												
	신설		<p>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p> <table border="1" data-bbox="1200 453 2011 564"> <thead> <tr> <th>20만㎡ 이하</th> <th>20만㎡ - 50만㎡</th> <th>50만㎡ - 100만㎡</th> <th>100만㎡ - 200만㎡</th> <th>200만㎡ - 300만㎡</th> <th>300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d>0.5</td> </tr> </tbody> </table> <p>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 예정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 가구, 필지별 예정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각1부 ㉤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예정중합도(폴리에스테필름) 1부 <p>※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p> <p>④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를 적용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구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에 대한 계산과 말박기측량을 구분하여 품을 적용할 수 있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20만㎡ 이하	20만㎡ - 50만㎡	50만㎡ - 100만㎡	100만㎡ - 200만㎡	200만㎡ - 300만㎡	300만㎡ 이상	1.0	0.9	0.8	0.7	0.6	0.5	
20만㎡ 이하	20만㎡ - 50만㎡	50만㎡ - 100만㎡	100만㎡ - 200만㎡	200만㎡ - 300만㎡	300만㎡ 이상											
1.0	0.9	0.8	0.7	0.6	0.5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9-1 자동제도(좌표독취)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 작업별</th> <th rowspan="3">일수</th> <th colspan="10">인 원 수</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자 료 조 사</td> <td>(0.04)</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 획 준 비</td> <td>(0.03)</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3)</td> <td>(0.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좌 표 독 취</td> <td>(0.37)</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면작성편집</td> <td>(0.15)</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 조 수 정</td> <td>(0.09)</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는 내업임</td> </tr> <tr> <td>성 과 작 성</td> <td>(0.06)</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점 검</td> <td>(0.07)</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 인 계</td> <td>(0.02)</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0.8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1)</td> <td>(0.6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4)		1								(0.04)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좌 표 독 취	(0.37)		1								(0.37)						도면작성편집	(0.15)		1								(0.15)						대 조 수 정	(0.09)	1								(0.09)						()는 내업임	성 과 작 성	(0.06)		1								(0.06)						점 검	(0.07)	1								(0.07)							성 과 인 계	(0.02)	1								(0.02)							합 계	(0.83)									(0.21)	(0.65)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4)		1								(0.04)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좌 표 독 취	(0.37)		1								(0.37)																																																																																																																																																																																										
				도면작성편집	(0.15)		1								(0.15)																																																																																																																																																																																										
				대 조 수 정	(0.09)	1								(0.09)						()는 내업임																																																																																																																																																																																					
				성 과 작 성	(0.06)		1								(0.06)																																																																																																																																																																																										
점 검	(0.07)	1								(0.07)																																																																																																																																																																																															
성 과 인 계	(0.02)	1								(0.02)																																																																																																																																																																																															
합 계	(0.83)									(0.21)	(0.65)																																																																																																																																																																																														
<p>[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척별 구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body> </table>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p>② 성과품 · 자동제도에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p>																																																																																																																																																																																																									
<p>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에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p>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9-2 자동제도(좌표입력)	신설			인 원 수		비고												
				구분	1일당					합계								
					작업별		일수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료조사														(0.05)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좌표입력	(0.31)			1						(0.31)				
				도면작성	(0.19)			1						(0.19)				
				대조수정	(0.07)		1						(0.07)					()는 내업임
				성과작성	(0.05)			1						(0.05)				
				점검	(0.03)		1						(0.03)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74)							(0.14)	(0.63)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항목	구분	현행	개정 (안)											비고																																																																																																																																																																										
21-39-3 자동제도(파일제공)	신설		<table border="1" data-bbox="1198 316 2011 826"> <thead> <tr> <th rowspan="3">구분 작업별</th> <th rowspan="3">일수</th> <th colspan="10">인원수</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자료조사</td> <td>(0.05)</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0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rowspan="9">()는 내업 임</td> </tr> <tr> <td>계획준비</td> <td>(0.04)</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0.04)</td> <td>(0.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데이터편집</td> <td>(0.09)</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0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면작성</td> <td>(0.06)</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조수정</td> <td>(0.08)</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0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과작성</td> <td>(0.07)</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0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점검</td> <td>(0.03)</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과인계</td> <td>(0.03)</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0.4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5)</td> <td>(0.3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data-bbox="1198 842 2022 954">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p> <table border="1" data-bbox="1198 970 2011 1109"> <thead> <tr> <th>축척별 구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body> </table> <p data-bbox="1198 1125 2022 1189"> ② 성과품 · 자동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p> <p data-bbox="1198 1204 2022 1428">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p>											구분 작업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5)		1					(0.05)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4)	1	1				(0.04)	(0.04)						데이터편집	(0.09)		1					(0.09)						도면작성	(0.06)		1					(0.06)						대조수정	(0.08)	1					(0.08)							성과작성	(0.07)		1					(0.07)						점검	(0.03)	1					(0.03)							성과인계	(0.03)	1						(0.03)						합계	(0.45)						(0.15)	(0.34)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구분 작업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5)		1					(0.05)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4)	1	1				(0.04)	(0.04)																																																																																																																																																																																
데이터편집	(0.09)		1					(0.09)																																																																																																																																																																																
도면작성	(0.06)		1					(0.06)																																																																																																																																																																																
대조수정	(0.08)	1					(0.08)																																																																																																																																																																																	
성과작성	(0.07)		1					(0.07)																																																																																																																																																																																
점검	(0.03)	1					(0.03)																																																																																																																																																																																	
성과인계	(0.03)	1						(0.03)																																																																																																																																																																																
합계	(0.45)						(0.15)	(0.34)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0 도시계획선(인선)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 작업별</th> <th rowspan="3">일수</th> <th colspan="10">인 원 수</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자 료 조 사</td> <td>(0.09)</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 획 준 비</td> <td>(0.03)</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3)</td> <td>(0.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등 사</td> <td>(0.13)</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시계획선인선</td> <td>(0.1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1)</td> <td></td> <td></td> <td></td> <td></td> <td>()는 내업 임</td> </tr> <tr> <td>대 조 수 정</td> <td>(0.07)</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점 검</td> <td>(0.04)</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 인 계</td> <td>(0.03)</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0.5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7)</td> <td>(0.3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09)		1								(0.09)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등 사	(0.13)		1								(0.13)						도시계획선인선	(0.11)		1								(0.11)					()는 내업 임	대 조 수 정	(0.07)	1								(0.07)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3)	1								(0.03)							합 계	(0.50)									(0.17)	(0.36)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09)		1								(0.09)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등 사	(0.13)		1								(0.13)																																																																																																																																																																										
				도시계획선인선	(0.11)		1								(0.11)					()는 내업 임																																																																																																																																																																					
				대 조 수 정	(0.07)	1								(0.07)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3)	1								(0.03)																																																																																																																																																																															
합 계	(0.50)									(0.17)	(0.36)																																																																																																																																																																														
<p>[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척별 구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body> </table>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p>②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방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을 도면에 인선한 품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p>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1-1 축척변경 측량(도 해지역에서 도해지 역으로)	신설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41)		1						(0.41)							
							계 획 준 비	(0.08)	1	1						(0.08)		(0.08)					
							현 장 조 사	0.26	1	1						0.26		0.26					
							등 사	(0.06)		1						(0.06)							
							준 비 도	작 성	(0.08)		1	1						(0.08)	(0.08)				
								확 인	(0.02)	1						(0.02)							
							신 도 측 도	(0.03)			1							(0.03)					
							실 지 측 량	0.43	1	1	1					0.43		0.43	0.43				
							경 계점 결 정	(0.35)	1	1						(0.35)		(0.35)					
							결 과도 작 성	(0.04)		1	1							(0.04)	(0.04)				
							성 과 작 성	(0.13)		1	1							(0.13)	(0.13)				
							점 검	(0.01)	1							(0.01)							
							성 과 인 계	(0.02)	1							(0.02)							
							소 계	외 업	0.69									0.69	0.69	0.43			
								내 업	(1.23)									(0.48)	(1.15)	(0.28)			
							합 계	1.92								1.17		1.84	0.71				
							[주] ① 면적계수														()는 내업 임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축척별 구분</td> <td>1/600</td> <td>1/1000, 1/1200, 1/2400</td> <td>1/3000</td> <td>1/6000</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able> <p>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구분 내 용</td> <td>군지역</td> <td>시지역</td> <td>구지역</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able> <p>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r> <td>내용 구분</td> <td>50필지이하</td> <td>51-100필지</td> <td>101-500필지</td> <td>501-1000필지</td> <td>1000필지초과</td> </tr>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able> <p>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1부 ㉟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㊱ 측량성과도 1부 <p>⑥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p>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구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구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1-2 축척변경 측량(도 해지역에서 수치지 역으로)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rowspan="3">일수</th> <th colspan="10">인 원 수</th> <th rowspan="3">비 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자 료 조 사</td> <td>(0.04)</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 획 준 비</td> <td>(0.01)</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1)</td> <td>(0.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현 장 조 사</td> <td>0.2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2</td> <td>0.2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등 사</td> <td>(0.0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현 지 측 량</td> <td>0.56</td> <td>1</td> <td>1</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56</td> <td>0.56</td> <td>0.56</td> <td>0.56</td> <td></td> <td></td> <td></td> </tr> <tr> <td>좌 표 계 산</td> <td>(0.19)</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좌 표 전 개</td> <td>(0.02)</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경 계 접 조 정</td> <td>(1.08)</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08)</td> <td>(1.0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면 적 계 산</td> <td>(0.20)</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0)</td> <td>(0.2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결 과 도 작 성</td> <td>(0.04)</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1)</td> <td>(0.1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 작 성</td> <td>(0.05)</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8)</td> <td>(0.0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점 검</td> <td>(0.0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 인 계</td> <td>(0.02)</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소 계</td> <td>외 업</td> <td>0.7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78</td> <td>0.78</td> <td>0.56</td> <td>0.56</td> <td></td> <td></td> </tr> <tr> <td>내 업</td> <td>(1.6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12)</td> <td>(1.72)</td> <td>(0.41)</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2.4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90</td> <td>2.50</td> <td>0.97</td> <td>0.56</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4)		1								(0.04)						계 획 준 비	(0.01)	1	1							(0.01)	(0.01)						현 장 조 사	0.22	1	1							0.22	0.22						등 사	(0.01)		1								(0.01)						현 지 측 량	0.56	1	1	1	1					0.56	0.56	0.56	0.56				좌 표 계 산	(0.19)		1								(0.19)						좌 표 전 개	(0.02)			1								(0.02)					경 계 접 조 정	(1.08)	1	1							(1.08)	(1.08)						면 적 계 산	(0.20)		1	1							(0.20)	(0.20)					결 과 도 작 성	(0.04)		1	1							(0.11)	(0.11)					성 과 작 성	(0.05)		1	1							(0.08)	(0.08)					점 검	(0.01)	1								(0.01)							성 과 인 계	(0.02)	1								(0.02)							소 계	외 업	0.78									0.78	0.78	0.56	0.56			내 업	(1.67)									(1.12)	(1.72)	(0.41)				합 계	2.45									1.90	2.50	0.97	0.56				()는 내업 임
				구 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4)		1								(0.04)																																																																																																																																																																																																																																																																																																																
				계 획 준 비	(0.01)	1	1							(0.01)	(0.01)																																																																																																																																																																																																																																																																																																																
				현 장 조 사	0.22	1	1							0.22	0.22																																																																																																																																																																																																																																																																																																																
				등 사	(0.01)		1								(0.01)																																																																																																																																																																																																																																																																																																																
				현 지 측 량	0.56	1	1	1	1					0.56	0.56	0.56	0.56																																																																																																																																																																																																																																																																																																														
				좌 표 계 산	(0.19)		1								(0.19)																																																																																																																																																																																																																																																																																																																
				좌 표 전 개	(0.02)			1								(0.02)																																																																																																																																																																																																																																																																																																															
				경 계 접 조 정	(1.08)	1	1							(1.08)	(1.08)																																																																																																																																																																																																																																																																																																																
				면 적 계 산	(0.20)		1	1							(0.20)	(0.20)																																																																																																																																																																																																																																																																																																															
				결 과 도 작 성	(0.04)		1	1							(0.11)	(0.11)																																																																																																																																																																																																																																																																																																															
				성 과 작 성	(0.05)		1	1							(0.08)	(0.08)																																																																																																																																																																																																																																																																																																															
				점 검	(0.01)	1								(0.01)																																																																																																																																																																																																																																																																																																																	
				성 과 인 계	(0.02)	1								(0.02)																																																																																																																																																																																																																																																																																																																	
				소 계	외 업	0.78									0.78	0.78	0.56	0.56																																																																																																																																																																																																																																																																																																													
					내 업	(1.67)									(1.12)	(1.72)	(0.41)																																																																																																																																																																																																																																																																																																														
				합 계	2.45									1.90	2.50	0.97	0.56																																																																																																																																																																																																																																																																																																														
<p>[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산횟수 구 분</th> <th>0회</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body> </table>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항목	구분	현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98 379 2011 507"> <thead> <tr> <th data-bbox="1198 379 1400 448">구분 내 용</th> <th data-bbox="1400 379 1606 448">군지역</th> <th data-bbox="1606 379 1807 448">시지역</th> <th data-bbox="1807 379 2011 448">구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198 448 1400 507">계수</td> <td data-bbox="1400 448 1606 507">0.00</td> <td data-bbox="1606 448 1807 507">0.40</td> <td data-bbox="1807 448 2011 507">0.54</td> </tr> </tbody> </table> <p>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98 676 2011 810"> <thead> <tr> <th data-bbox="1198 676 1270 745">내용 구분</th> <th data-bbox="1270 676 1400 745">50필지이하</th> <th data-bbox="1400 676 1532 745">51-100필지</th> <th data-bbox="1532 676 1684 745">101-500필지</th> <th data-bbox="1684 676 1848 745">501-1000필지</th> <th data-bbox="1848 676 2011 745">1000필지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198 745 1270 810">계수</td> <td data-bbox="1270 745 1400 810">1.00</td> <td data-bbox="1400 745 1532 810">0.97</td> <td data-bbox="1532 745 1684 810">0.91</td> <td data-bbox="1684 745 1848 810">0.84</td> <td data-bbox="1848 745 2011 810">0.76</td> </tr> </tbody> </table> <p>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p>⑤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구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구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2-1 시설편입지 면적측 정(도해)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 작업별</th> <th rowspan="3">일수</th> <th colspan="10">인 원 수</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자 료 조 사</td> <td>(0.20)</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 획 준 비</td> <td>(0.04)</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4)</td> <td>(0.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등 사</td> <td>(0.10)</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준 비 도</td> <td>작 성</td> <td>(0.10)</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확 인</td> <td>(0.06)</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결 과 도 작 성</td> <td>(0.10)</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면 적 측 정</td> <td>(0.04)</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 도 및 조서 작 성</td> <td>(0.04)</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점 검</td> <td>(0.05)</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 인 계</td> <td>(0.05)</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0.7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4)</td> <td>(0.50)</td> <td>(0.18)</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0)		1								(0.20)						계 획 준 비	(0.04)	1	1							(0.04)	(0.04)						등 사	(0.10)		1								(0.10)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면 적 측 정	(0.04)				1							(0.04)					성 과 도 및 조서 작 성	(0.04)				1							(0.04)					점 검	(0.05)	1								(0.05)							성 과 인 계	(0.05)	1								(0.05)							합 계	(0.78)									(0.14)	(0.50)	(0.18)					()는 내업임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0)		1								(0.20)																																																																																																																																																																																																																											
				계 획 준 비	(0.04)	1	1							(0.04)	(0.04)																																																																																																																																																																																																																											
				등 사	(0.10)		1								(0.10)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면 적 측 정	(0.04)				1							(0.04)																																																																																																																																																																																																																										
				성 과 도 및 조서 작 성	(0.04)				1							(0.04)																																																																																																																																																																																																																										
				점 검	(0.05)	1								(0.05)																																																																																																																																																																																																																												
				성 과 인 계	(0.05)	1								(0.05)																																																																																																																																																																																																																												
				합 계	(0.78)									(0.14)	(0.50)	(0.18)																																																																																																																																																																																																																										
<p>[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산횟수 구 분</th> <th>0회</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body> </table>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p>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척별 구분</th> <th>1/500, 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body> </table>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항목	구분	현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p> <p>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할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200 459 2018 587"> <thead> <tr> <th data-bbox="1200 459 1294 523">내용 구분</th> <th data-bbox="1294 459 1429 523">50필지이하</th> <th data-bbox="1429 459 1563 523">51-100필지</th> <th data-bbox="1563 459 1715 523">101-500필지</th> <th data-bbox="1715 459 1868 523">501-1000필지</th> <th data-bbox="1868 459 2018 523">1000필지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200 523 1294 587">계수</td> <td data-bbox="1294 523 1429 587">1.00</td> <td data-bbox="1429 523 1563 587">0.97</td> <td data-bbox="1563 523 1715 587">0.91</td> <td data-bbox="1715 523 1868 587">0.84</td> <td data-bbox="1868 523 2018 587">0.76</td> </tr> </tbody> </table> <p>④ 성과작성품</p> <p>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편입지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성과도 1부 <p>⑤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품은 도해지역에 대하여 작업한 품이다. ·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2-2 시설편입지 면적측 정(수치)	신설																									
							구 분		인 원 수						비고											
							작업별	일수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22)		1					(0.22)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08)		1						(0.08)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6)		1							(0.16)									
							면 적 측 정	(0.06)			1							(0.06)								
							성 과 도 및 조 서 작 성	(0.06)			1							(0.06)								
							검 검	(0.06)	1							(0.06)										
							성 과 인 계	(0.06)	1							(0.06)										
합 계	(0.92)								(0.18)	(0.58)	(0.22)															
[주] ① 면적계수							()는 내업 임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할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시설편입지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 좌표면적계산부 ㉣ 면적조서 ㉤ 성과도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수치지역에 대하여 작업한 품이다. ·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1부 1부 1부 3부 1부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3-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일수</th> <th colspan="10">인 원 수</th> <th rowspan="3">비 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자 료 조 사</td> <td>(0.24)</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 획 준 비</td> <td>(0.06)</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등 사</td> <td>(0.1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준비도</td> <td>작 성</td> <td>(0.10)</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확 인</td> <td>(0.08)</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실 지 측 량</td> <td>0.53</td> <td>1</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53</td> <td></td> <td>0.53</td> <td>0.53</td> <td></td> <td></td> <td rowspan="10">()는 내업 임</td> </tr> <tr> <td>성 과 설 명</td> <td>0.06</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결 과 도 작 성</td> <td>(0.09)</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과도및조서작성</td> <td>(0.05)</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5)</td> <td></td> <td></td> <td></td> </tr> <tr> <td>점 검</td> <td>(0.04)</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 인 계</td> <td>(0.06)</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소계</td> <td>외 업</td> <td>0.5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59</td> <td></td> <td>0.53</td> <td>0.53</td> <td></td> <td></td> </tr> <tr> <td>내 업</td> <td>(0.8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6)</td> <td>(0.58)</td> <td>(0.15)</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1.4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75</td> <td>0.58</td> <td>0.68</td> <td>0.53</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4)		1								(0.24)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11)		1								(0.11)						준비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8)		1							(0.08)						실 지 측 량	0.53	1		1	1					0.53		0.53	0.53			()는 내업 임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09)		1								(0.09)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계	외 업	0.59									0.59		0.53	0.53			내 업	(0.83)									(0.16)	(0.58)	(0.15)			합 계	1.42									0.75	0.58	0.68	0.53			
				구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4)		1								(0.24)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11)		1								(0.11)																																																																																																																																																																																																																																																																						
				준비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8)		1							(0.08)																																																																																																																																																																																																																																																																						
				실 지 측 량	0.53	1		1	1					0.53		0.53	0.53			()는 내업 임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09)		1								(0.09)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계	외 업	0.59									0.59		0.53	0.53																																																																																																																																																																																																																																																																			
					내 업	(0.83)									(0.16)	(0.58)	(0.15)																																																																																																																																																																																																																																																																				
				합 계	1.42									0.75	0.58	0.68	0.53																																																																																																																																																																																																																																																																				
				<p>[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의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산횟수 구 분</th> <th>0회</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body> </table>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p>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척별 구분</th> <th>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body> </table>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군지역</th> <th>시지역</th> <th>구지역</th> </tr> </thead> <tbody> <tr> <td>내용</td> <td></td> <td></td> <td></td> </tr>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body> </table>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내용				계수	0.00	0.40	0.54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내용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도시계획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50필지이하</th> <th>51-100필지</th> <th>101-500필지</th> <th>501-1000필지</th> <th>1000필지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body> </table>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도시계획 명시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도시계획 명시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5점이하</th> <th>6점-10점</th> <th>11점-15점</th> <th>16점-20점</th> <th>21점-25점</th> <th>26점-30점</th> <th>30점초과시 매5점마다</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05</td> <td>0.10</td> <td>0.15</td> <td>0.20</td> <td>0.25</td> <td>0.05×n</td> </tr> </tbody> </table>	내용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내용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결과도 1부 ㉟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㊱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도시계획 명시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도시계획 명시측량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1필지의 면적은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구획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3-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일수</th> <th colspan="10">인 원 수</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자 료 조 사</td> <td>(0.25)</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 획 준 비</td> <td>(0.06)</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등 사</td> <td>(0.07)</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준비도</td> <td>작 성</td> <td>(0.10)</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확 인</td> <td>(0.06)</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실 지 측 량</td> <td>0.78</td> <td>1</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0.78</td> <td></td> <td>0.78</td> <td>0.78</td> <td></td> <td></td> <td></td> <td rowspan="10">()는 내업 임</td> </tr> <tr> <td>성 과 설 명</td> <td>0.06</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결 과 도 작 성</td> <td>(0.14)</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도맞조서작성</td> <td>(0.05)</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접 겹</td> <td>(0.06)</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 인 계</td> <td>(0.06)</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소 계</td> <td>외 업</td> <td>0.8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84</td> <td></td> <td>0.78</td> <td>0.78</td> <td></td> <td></td> </tr> <tr> <td>내 업</td> <td>(0.8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8)</td> <td>(0.58)</td> <td>(0.15)</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1.6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02</td> <td>0.58</td> <td>0.93</td> <td>0.78</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5)		1								(0.25)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07)		1								(0.07)						준비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78	1		1	1				0.78		0.78	0.78				()는 내업 임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4)		1							(0.14)						성 과도맞조서작성	(0.05)			1							(0.05)					접 겹	(0.06)	1							(0.06)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 계	외 업	0.84								0.84		0.78	0.78			내 업	(0.85)								(0.18)	(0.58)	(0.15)				합 계	1.69								1.02	0.58	0.93	0.78				
				구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5)		1								(0.25)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07)		1								(0.07)																																																																																																																																																																																																																																																																					
				준비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78	1		1	1				0.78		0.78	0.78				()는 내업 임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4)		1							(0.14)																																																																																																																																																																																																																																																																						
				성 과도맞조서작성	(0.05)			1							(0.05)																																																																																																																																																																																																																																																																					
				접 겹	(0.06)	1							(0.06)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 계	외 업	0.84								0.84		0.78	0.78																																																																																																																																																																																																																																																																			
					내 업	(0.85)								(0.18)	(0.58)	(0.15)																																																																																																																																																																																																																																																																				
				합 계	1.69								1.02	0.58	0.93	0.78																																																																																																																																																																																																																																																																				
				<p>[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산횟수</th> <th>0회</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body> </table>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p>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군지역</th> <th>시지역</th> <th>구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body> </table>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p> <p>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도시계획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98 411 2011 523"> <thead> <tr> <th>내용 구분</th> <th>50필지이하</th> <th>51-100필지</th> <th>101-500필지</th> <th>501-1000필지</th> <th>1000필지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body> </table> <p>④ 측점계수</p> <p>본 품은 5점의 도시계획 명시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도시계획 명시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98 651 2011 770"> <thead> <tr> <th>내용 구분</th> <th>5점이하</th> <th>6점-10점</th> <th>11점-15점</th> <th>16점-20점</th> <th>21점-25점</th> <th>26점-30점</th> <th>30점초과시 매5점마다</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05</td> <td>0.10</td> <td>0.15</td> <td>0.20</td> <td>0.25</td> <td>0.05×n</td> </tr> </tbody> </table> <p>⑤ 성과작성품</p> <p>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㉟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㊱ 측량성과도 1부 <p>⑥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품은 수치지역의 도시계획 명시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도시계획 명시측량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1필지의 면적은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구획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구분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구분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4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rowspan="3">일수</th> <th colspan="10">인 원 수</th> <th rowspan="3">비 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5">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자 료 조 사</td> <td>(0.19)</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rowspan="13">()는 내업임</td> </tr> <tr> <td>계 획 준 비</td> <td>(0.03)</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3)</td> <td>(0.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등 사</td> <td>(0.06)</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준 비 도</td> <td>작 성</td> <td>(0.04)</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확 인</td> <td>(0.0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실 지 측 량</td> <td>0.36</td> <td>1</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0.36</td> <td>0.36</td> <td>0.3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결 과 도 작 성</td> <td>(0.16)</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6)</td> <td>(0.1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면 적 측 정</td> <td>(0.08)</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8)</td> <td>(0.0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과도및조서작성</td> <td>(0.12)</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2)</td> <td>(0.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점 검</td> <td>(0.04)</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 과 인 계</td> <td>(0.05)</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소 계</td> <td>외 업</td> <td>0.3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36</td> <td>0.36</td> <td>0.36</td> <td></td> <td></td> <td></td> </tr> <tr> <td>내 업</td> <td>(0.7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3)</td> <td>(0.64)</td> <td>(0.40)</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1.1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49</td> <td>1.00</td> <td>0.76</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19)		1							(0.19)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등 사	(0.06)		1							(0.06)						준 비 도	작 성	(0.04)			1						(0.04)					확 인	(0.01)	1							(0.01)						실 지 측 량	0.36	1	1	1					0.36	0.36	0.36					결 과 도 작 성	(0.16)		1	1						(0.16)	(0.16)					면 적 측 정	(0.08)		1	1						(0.08)	(0.08)					성과도및조서작성	(0.12)		1	1						(0.12)	(0.12)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5)	1							(0.05)							소 계	외 업	0.36								0.36	0.36	0.36				내 업	(0.78)								(0.13)	(0.64)	(0.40)				합 계	1.14								0.49	1.00	0.76					
				구 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19)		1							(0.19)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등 사	(0.06)		1							(0.06)																																																																																																																																																																																																																																																																	
				준 비 도	작 성	(0.04)			1						(0.04)																																																																																																																																																																																																																																																																
					확 인	(0.01)	1							(0.01)																																																																																																																																																																																																																																																																	
				실 지 측 량	0.36	1	1	1					0.36	0.36	0.36																																																																																																																																																																																																																																																																
				결 과 도 작 성	(0.16)		1	1						(0.16)	(0.16)																																																																																																																																																																																																																																																																
				면 적 측 정	(0.08)		1	1						(0.08)	(0.08)																																																																																																																																																																																																																																																																
				성과도및조서작성	(0.12)		1	1						(0.12)	(0.12)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5)	1							(0.05)																																																																																																																																																																																																																																																																		
				소 계	외 업	0.36								0.36	0.36	0.36																																																																																																																																																																																																																																																															
					내 업	(0.78)								(0.13)	(0.64)	(0.40)																																																																																																																																																																																																																																																															
				합 계	1.14								0.49	1.00	0.76																																																																																																																																																																																																																																																																
				<p>[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 \ 가산횟수</th> <th>0회</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body> </table>															구 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구 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p>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 \ 축척별</th> <th>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body> </table>															구 분 \ 축척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구 분 \ 축척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p>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 내용</th> <th>군지역</th> <th>시지역</th> <th>구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body> </table> <p>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불부합지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 구분</th> <th>50필지이하</th> <th>51-100필지</th> <th>101-500필지</th> <th>501-1000필지</th> <th>1000필지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body> </table> <p>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㉕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㉖ 면적측정부 1부 ㉗ 면적조서 3부 ㉘ 측량성과도 1부 <p>⑥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p>	구분 \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구분 \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5-1 등록사항정정 측량 (도해)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 작업별</th> <th rowspan="3">일수</th> <th colspan="9">인 원 수</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5">1일당</th> <th colspan="4">합계</th> </tr> <tr>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사</th> <th>인부</th> <th>지적 기사</th> <th>지적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지적 기능사</th> <th>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자 료 조 사</td> <td>(0.79)</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79)</td> <td></td> </tr> <tr> <td>계 획 준 비</td> <td>(0.17)</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7)</td> <td>(0.17)</td> <td></td> </tr> <tr> <td>등 사</td> <td>(0.14)</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4)</td> <td></td> </tr> <tr> <td rowspan="2">준 비 도</td> <td>작 성</td> <td>(0.06)</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화 인</td> <td>(0.1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1)</td> <td></td> </tr> <tr> <td>실 지 측 량</td> <td>0.31</td> <td>1</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31</td> <td>0.31</td> <td>0.3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결 과 도 작 성</td> <td>(0.11)</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11)</td> <td>(0.1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면 적 측 정</td> <td>(0.06)</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6)</td> <td>(0.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과도및조서작성</td> <td>(0.07)</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7)</td> <td>(0.0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점 검</td> <td>(0.03)</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3)</td> <td></td> </tr> <tr> <td>성 과 인 계</td> <td>(0.04)</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4)</td> <td></td> </tr> <tr> <td rowspan="2">소 계</td> <td>외 업</td> <td>0.3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31</td> <td>0.31</td> <td>0.3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내 업</td> <td>(1.5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35)</td> <td>(1.34)</td> <td>(0.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1.8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66</td> <td>1.65</td> <td>0.6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79)		1								(0.79)											계 획 준 비	(0.17)	1	1							(0.17)	(0.17)											등 사	(0.14)		1								(0.14)											준 비 도	작 성	(0.06)			1							(0.06)										화 인	(0.11)	1							(0.11)												실 지 측 량	0.31	1	1	1						0.31	0.31	0.31									결 과 도 작 성	(0.11)		1	1							(0.11)	(0.11)										면 적 측 정	(0.06)		1	1							(0.06)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7)		1	1							(0.07)	(0.07)										점 검	(0.03)	1								(0.03)												성 과 인 계	(0.04)	1								(0.04)												소 계	외 업	0.31									0.31	0.31	0.31									내 업	(1.58)									(0.35)	(1.34)	(0.30)									합 계	1.89										0.66	1.65	0.61									()는 내업임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79)		1								(0.79)																																																																																																																																																																																																																																																																																																																																																
				계 획 준 비	(0.17)	1	1							(0.17)	(0.17)																																																																																																																																																																																																																																																																																																																																																
				등 사	(0.14)		1								(0.14)																																																																																																																																																																																																																																																																																																																																																
				준 비 도	작 성	(0.06)			1							(0.06)																																																																																																																																																																																																																																																																																																																																															
					화 인	(0.11)	1							(0.11)																																																																																																																																																																																																																																																																																																																																																	
				실 지 측 량	0.31	1	1	1						0.31	0.31	0.31																																																																																																																																																																																																																																																																																																																																															
				결 과 도 작 성	(0.11)		1	1							(0.11)	(0.11)																																																																																																																																																																																																																																																																																																																																															
				면 적 측 정	(0.06)		1	1							(0.06)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7)		1	1							(0.07)	(0.07)																																																																																																																																																																																																																																																																																																																																															
				점 검	(0.03)	1								(0.03)																																																																																																																																																																																																																																																																																																																																																	
				성 과 인 계	(0.04)	1								(0.04)																																																																																																																																																																																																																																																																																																																																																	
				소 계	외 업	0.31									0.31	0.31	0.31																																																																																																																																																																																																																																																																																																																																														
					내 업	(1.58)									(0.35)	(1.34)	(0.30)																																																																																																																																																																																																																																																																																																																																														
				합 계	1.89										0.66	1.65	0.61																																																																																																																																																																																																																																																																																																																																														
				<p>[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산횟수 구 분</th> <th>0회</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body> </table> <p>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척별 구분</th> <th>1/600</th> <th>1/1000, 1/1200, 1/2400</th> <th>1/3000</th> <th>1/6000</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23</td> <td>0.35</td> <td>0.37</td> </tr> </tbody> </table>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 내용</th> <th>군지역</th> <th>시지역</th> <th>구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body> </table>	구분 \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구분 \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사항정정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 구분</th> <th>50필지이하</th> <th>51-100필지</th> <th>101-500필지</th> <th>501-1000필지</th> <th>1000필지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1.00</td> <td>0.97</td> <td>0.91</td> <td>0.84</td> <td>0.76</td> </tr> </tbody> </table>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등록사항정정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5-2 등록사항정정 측량 (수치)	신설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0)		1							(0.20)																															
							계 획 준 비	(0.08)	1	1						(0.08)	(0.08)																															
							등 사	(0.09)		1							(0.09)																															
							준비도	작 성	(0.23)			1								(0.23)																												
								확 인	(0.21)	1							(0.21)																															
							실 지 측 량	0.32	1	1	1					0.32	0.32		0.32																													
							결 과 도 작 성	(0.22)		1	1						(0.22)		(0.22)																													
							면 적 측 정	(0.19)		1	1						(0.19)		(0.19)																													
							성과도및조서작성	(0.21)		1	1						(0.21)		(0.21)																													
							점 검	(0.11)	1							(0.11)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 계	외 업	0.32								0.32		0.32	0.32																												
								내 업	(1.60)								(0.46)		(0.99)	(0.85)																												
							합 계	1.92								0.78	1.31		1.17																													
							<p>[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산횟수 구 분</th> <th>0회</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62</td> <td>0.75</td> <td>0.90</td> <td>1.13</td> <td>1.23</td> <td>0.73+0.1(n)</td> </tr> </tbody> </table> <p>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 내 용</th> <th>군지역</th> <th>시지역</th> <th>구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계수</td> <td>0.00</td> <td>0.40</td> <td>0.54</td> </tr> </tbody> </table>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항목	구분	현행	개정 (안)	비고												
	신설		<p>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사항정정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200 419 2011 550"> <thead> <tr> <th data-bbox="1200 419 1285 486">내용 구분</th> <th data-bbox="1285 419 1417 486">50필지이하</th> <th data-bbox="1417 419 1550 486">51-100필지</th> <th data-bbox="1550 419 1682 486">101-500필지</th> <th data-bbox="1682 419 1839 486">501-1000필지</th> <th data-bbox="1839 419 2011 486">1000필지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200 486 1285 550">계수</td> <td data-bbox="1285 486 1417 550">1.00</td> <td data-bbox="1417 486 1550 550">0.97</td> <td data-bbox="1550 486 1682 550">0.91</td> <td data-bbox="1682 486 1839 550">0.84</td> <td data-bbox="1839 486 2011 550">0.76</td> </tr> </tbody> </table> <p>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p>⑤ 기타사항 · 본 품은 수치지역의 등록사항정정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p>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6 도면확대·축소	신설			인 원 수		비고																	
				구분 작업별	일수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신도·축도	(0.19)		1						(0.19)							
				점	검		(0.07)		1							(0.07)							
				합	계		(0.26)									(0.2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에 의하여 작업한 품이다. ·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7 조서작성	신설		<table border="1" data-bbox="1198 323 2004 783"> <thead> <tr> <th data-bbox="1198 323 1332 523" rowspan="3">구분 작업별</th> <th data-bbox="1332 323 1384 523" rowspan="3">일수</th> <th colspan="10" data-bbox="1384 323 1937 363">인 원 수</th> <th data-bbox="1937 323 2004 523"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5" data-bbox="1384 363 1541 403">1일당</th> <th colspan="5" data-bbox="1384 363 1937 403">합계</th> </tr> <tr> <th data-bbox="1384 403 1440 523">지적 기사</th> <th data-bbox="1440 403 1496 523">지적 산업 기사</th> <th data-bbox="1496 403 1552 523">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 data-bbox="1552 403 1608 523">지적 기능 사</th> <th data-bbox="1608 403 1664 523">인부</th> <th data-bbox="1384 403 1440 523">지적 기사</th> <th data-bbox="1440 403 1496 523">지적 산업 기사</th> <th data-bbox="1496 403 1552 523">지적 기능 산업 기사</th> <th data-bbox="1552 403 1608 523">지적 기능사</th> <th data-bbox="1608 403 1664 523">인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198 523 1332 563">자 료 조 사</td> <td data-bbox="1332 523 1384 563">(0.01)</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1)</td> <td></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1198 563 1332 603">조 서 작 성</td> <td data-bbox="1332 563 1384 603">(0.01)</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1)</td> <td></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1198 603 1332 643">점 검</td> <td data-bbox="1332 603 1384 643">(0.0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1198 643 1332 683">성 과 인 계</td> <td data-bbox="1332 643 1384 683">(0.0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1198 683 1332 783">합 계</td> <td data-bbox="1332 683 1384 783">(0.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0.02)</td> <td>(0.02)</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data-bbox="1198 847 2022 1109"> [주]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조서 1부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p>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1)			1								(0.01)				조 서 작 성	(0.01)			1								(0.01)				점 검	(0.01)		1								(0.01)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04)										(0.02)	(0.02)				()는 내업임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1)			1								(0.01)																																																																																																									
조 서 작 성	(0.01)			1								(0.01)																																																																																																									
점 검	(0.01)		1								(0.01)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04)										(0.02)	(0.02)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8 도면복사(A2)	신설															
				인 원 수												
				1일당												
				합계												
				구 분 작업별	일수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비고
						자 료 조 사	(0.01)			1					(0.01)	
				작 업 계 획	(0.01)		1	1					(0.01)	(0.01)		
				복 사	(0.28)		1	1					(0.28)	(0.28)		
복 사 대 조	(0.01)		1						(0.01)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32)								(0.31)	(0.30)						
<p>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면사본 1부</p> <p>②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면을 전자복사기에 의하여 복사한 품이다.</p>													()는 내업임			

나. 건축부문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3 적용방법	보완	<p>1.3 적용방법</p> <p>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다.</p> <p>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을 발주청에서 활용한 경우, 발주청이 동 기술을 표준품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시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표준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다.</p> <p>9. 표준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서는 상기 8항의 품을 표준품셈 개정절차에 따라 표준품셈의 “부록”에 「참고품」으로 수록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1.3 적용방법</p> <p>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p> <p>8. _____ _____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건설기술연구원)</p> <p>9. _____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건설기술연구원)</p>	
1-4 수량의 계산	보완	<p>1-4 수량의 계산</p> <p>1. 수량은 C.G.S 단위로 사용한다.</p> <p>2-9 (생략)</p>	<p>1-4 수량의 계산</p> <p>1. “삭제”</p> <p>1-8 (현행과 같음)</p>	
1-8 주요자재	보완	<p>[참고]</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9.9)</p> <p>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주요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0조, 제21조 참조></p>	<p>[참고]</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8.24)</p> <p>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삭제”></p>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4-5-4 제초 및 풀깎기	보완	4-5-4 제초 및 풀깎기 (100㎡당)	4-5-4 제초 및 풀깎기 (100㎡당)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 <th>보통인부</th> <th>종별</th> <th>보통인부</th> </tr> </thead> <tbody> <tr> <td><u>잔디(대)깎기</u> 기계사용잔디깎기</td> <td>0.3~0.4 0.15~0.2</td> <td>제초 <u>제초(여자인부)</u> 제초(잡초가 적은지역)</td> <td>0.5~1.0 1.5~2.0 0.3~0.6</td> </tr> </tbody> </table>	종별		보통인부	종별	보통인부	<u>잔디(대)깎기</u> 기계사용잔디깎기	0.3~0.4 0.15~0.2	제초 <u>제초(여자인부)</u> 제초(잡초가 적은지역)	0.5~1.0 1.5~2.0 0.3~0.6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 <th>보통인부</th> <th>종별</th> <th>보통인부</th> </tr> </thead> <tbody> <tr> <td><u>잔디깎기</u> 기계사용잔디깎기</td> <td>0.3~0.4 0.15~0.2</td> <td>제초 <u>“삭제”</u> 제초(잡초가 적은지역)</td> <td>0.5~1.0 <u>“삭제”</u> 0.3~0.6</td> </tr> </tbody> </table>	종별	보통인부	종별	보통인부	<u>잔디깎기</u> 기계사용잔디깎기	0.3~0.4 0.15~0.2	제초 <u>“삭제”</u> 제초(잡초가 적은지역)	0.5~1.0 <u>“삭제”</u> 0.3~0.6									
종별	보통인부	종별	보통인부																										
<u>잔디(대)깎기</u> 기계사용잔디깎기	0.3~0.4 0.15~0.2	제초 <u>제초(여자인부)</u> 제초(잡초가 적은지역)	0.5~1.0 1.5~2.0 0.3~0.6																										
종별	보통인부	종별	보통인부																										
<u>잔디깎기</u> 기계사용잔디깎기	0.3~0.4 0.15~0.2	제초 <u>“삭제”</u> 제초(잡초가 적은지역)	0.5~1.0 <u>“삭제”</u> 0.3~0.6																										
		[주] ① 기계사용시 돌이 섞여 있는 지역에는 남자 0.1인, 여자 0.3~0.4인 이 따로 소요된다. ② “생략”	[주]①기계사용시 돌이 섞여 있는 지역에는 0.1인을 추가 계상한다. ② “현행과 같음”																										
20-3 도배바름	보완	2. 장판지 (㎡당)	2. 장판지 (㎡당)																										
		<table border="1"> <thead> <tr> <th>초배지 (㎡)</th> <th>재배지 (㎡)</th> <th>정벌 및 바름 (㎡)</th> <th>장판지 (㎡)</th> <th>풀 (kg)</th> <th>도배공 (인)</th> <th>보통인부 (인)</th> </tr> </thead> <tbody> <tr> <td>1.2</td> <td>1.2</td> <td>1.1</td> <td>1.1</td> <td>0.1~0.25</td> <td>0.05~0.1</td> <td>0.05~0.1</td> </tr> </tbody> </table>	초배지 (㎡)		재배지 (㎡)	정벌 및 바름 (㎡)	장판지 (㎡)	풀 (kg)	도배공 (인)	보통인부 (인)	1.2	1.2	1.1	1.1	0.1~0.25	0.05~0.1	0.05~0.1	<table border="1"> <thead> <tr> <th>초배지 (㎡)</th> <th>재배지 (㎡)</th> <th>정벌 및 바름 (㎡)</th> <th>장판지 (㎡)</th> <th>풀 (kg)</th> <th>도배공 (인)</th> <th>보통인부 (인)</th> </tr> </thead> <tbody> <tr> <td>1.2</td> <td>1.2</td> <td>1.1</td> <td>1.1</td> <td>0.1~0.25</td> <td>0.05~0.1</td> <td>0.05~0.1</td> </tr> </tbody> </table>	초배지 (㎡)	재배지 (㎡)	정벌 및 바름 (㎡)	장판지 (㎡)	풀 (kg)	도배공 (인)	보통인부 (인)	1.2	1.2	1.1	1.1
초배지 (㎡)	재배지 (㎡)	정벌 및 바름 (㎡)	장판지 (㎡)	풀 (kg)	도배공 (인)	보통인부 (인)																							
1.2	1.2	1.1	1.1	0.1~0.25	0.05~0.1	0.05~0.1																							
초배지 (㎡)	재배지 (㎡)	정벌 및 바름 (㎡)	장판지 (㎡)	풀 (kg)	도배공 (인)	보통인부 (인)																							
1.2	1.2	1.1	1.1	0.1~0.25	0.05~0.1	0.05~0.1																							

다. 기계설비부문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3 적용방법	보완	<p>1.3 적용방법</p> <p>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다.</p> <p>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을 발주청에서 활용한 경우, 발주청이 동 기술을 표준품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시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표준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다.</p> <p>9. 표준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서는 상기 8항의 품을 표준품셈 개정절차에 따라 표준품셈의 “부록”에 「참고품」으로 수록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1.3 적용방법</p> <p>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p> <p>8. _____ _____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건설기술연구원)</p> <p>9. _____ _____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건설기술연구원)</p>	
1-4 수량의 계산	보완	<p>1-4 수량의 계산</p> <p>1. 수량은 C.G.S 단위로 사용한다.</p> <p>2-9 (생략)</p>	<p>1-4 수량의 계산</p> <p>1. “삭제”</p> <p>1-8 (현행과 같음)</p>	
1-8 주요자재	보완	<p>[참고]</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9.9)</p> <p>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주요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0조, 제21조 참조></p>	<p>[참고]</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8.24)</p> <p>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삭제”></p>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3-1-1 위생기구 설치	보완 (이월)	<p>3-1-1 위생기구 설치 (개당)</p> <table border="1" data-bbox="414 284 1160 539"> <thead> <tr> <th>종 별</th> <th>위생공</th> <th>보통인부</th> </tr> </thead> <tbody> <tr> <td>동양식대변기(하이탱크용)</td> <td>1.46</td> <td>0.3</td> </tr> <tr> <td>동양식대변기(F.V용)</td> <td>1.1</td> <td>0.22</td> </tr> <tr> <td>양식대변기(로탱크용)</td> <td>1.76</td> <td>0.37</td> </tr> <tr> <td>양식대변기(F.V용)</td> <td>1.17</td> <td>0.29</td> </tr> </tbody> </table> <p>[주] ① 본 품에는 지지철물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는 벽체에 구멍을 뚫고 목심을 박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샤워장치(매립형)의 품은 매립배관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p>	종 별	위생공	보통인부	동양식대변기(하이탱크용)	1.46	0.3	동양식대변기(F.V용)	1.1	0.22	양식대변기(로탱크용)	1.76	0.37	양식대변기(F.V용)	1.17	0.29	<p>3-1- 1 위생기구 설치 (개당)</p> <table border="1" data-bbox="1209 284 1955 539"> <thead> <tr> <th>종 별</th> <th>위생공</th> <th>보통인부</th> </tr> </thead> <tbody> <tr> <td>동양식대변기(하이탱크용)</td> <td>“삭 제”</td> <td>“삭 제”</td> </tr> <tr> <td>동양식대변기(F.V용)</td> <td>“삭 제”</td> <td>“삭 제”</td> </tr> <tr> <td>양식대변기(로탱크용)</td> <td>“삭 제”</td> <td>“삭 제”</td> </tr> <tr> <td>양식대변기(F.V용)</td> <td>“삭 제”</td> <td>“삭 제”</td> </tr> </tbody> </table> <p>[주] ①, ②, ③, ④ “현행과 같음”</p> <p>3-1-2 대변기 설치 (개당)</p> <table border="1" data-bbox="1209 718 1955 938"> <thead> <tr> <th>구 분</th> <th>위생공</th> <th>보통인부</th> </tr> </thead> <tbody> <tr> <td>동양식대변기 (하이탱크용)</td> <td>1.46</td> <td>0.3</td> </tr> <tr> <td>동양식대변기 (F.V용)</td> <td>1.1</td> <td>0.22</td> </tr> <tr> <td>양식대변기 (로탱크용)</td> <td>1.76</td> <td>0.37</td> </tr> <tr> <td>양식대변기 (F.V용)</td> <td>1.17</td> <td>0.29</td> </tr> </tbody> </table> <p>[주] ① 본 품은 대변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멘트 충전, 스티브설치,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은 앵글밸브, 탱크, 연결관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통수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것이다. ④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을 적용하며, 작업범위는 상기내용과 동일하다</p> <p>(개당)</p> <table border="1" data-bbox="1209 1228 1955 1340"> <thead> <tr> <th>구 분</th> <th>위생공</th> <th>보통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양식대변기 (로탱크용)</td> <td>0.72</td> <td>0.13</td> </tr> </tbody> </table>	종 별	위생공	보통인부	동양식대변기(하이탱크용)	“삭 제”	“삭 제”	동양식대변기(F.V용)	“삭 제”	“삭 제”	양식대변기(로탱크용)	“삭 제”	“삭 제”	양식대변기(F.V용)	“삭 제”	“삭 제”	구 분	위생공	보통인부	동양식대변기 (하이탱크용)	1.46	0.3	동양식대변기 (F.V용)	1.1	0.22	양식대변기 (로탱크용)	1.76	0.37	양식대변기 (F.V용)	1.17	0.29	구 분	위생공	보통인부	양식대변기 (로탱크용)	0.72	0.13	
		종 별	위생공	보통인부																																																			
동양식대변기(하이탱크용)	1.46	0.3																																																					
동양식대변기(F.V용)	1.1	0.22																																																					
양식대변기(로탱크용)	1.76	0.37																																																					
양식대변기(F.V용)	1.17	0.29																																																					
종 별	위생공	보통인부																																																					
동양식대변기(하이탱크용)	“삭 제”	“삭 제”																																																					
동양식대변기(F.V용)	“삭 제”	“삭 제”																																																					
양식대변기(로탱크용)	“삭 제”	“삭 제”																																																					
양식대변기(F.V용)	“삭 제”	“삭 제”																																																					
구 분	위생공	보통인부																																																					
동양식대변기 (하이탱크용)	1.46	0.3																																																					
동양식대변기 (F.V용)	1.1	0.22																																																					
양식대변기 (로탱크용)	1.76	0.37																																																					
양식대변기 (F.V용)	1.17	0.29																																																					
구 분	위생공	보통인부																																																					
양식대변기 (로탱크용)	0.72	0.13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5-1 소각로 설치	보완 (이월)	5-1 소각로 설치 1. 공정별 설치 “생략” 2. 사용장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지게차</td> <td>5ton</td> <td>대</td> <td>1</td> </tr> <tr> <td rowspan="4">크레인</td> <td>30ton</td> <td>대</td> <td>1</td> </tr> <tr> <td>50ton</td> <td>대</td> <td>1</td> </tr> <tr> <td>150ton</td> <td>대</td> <td>1</td> </tr> <tr> <td>200ton</td> <td>대</td> <td>1</td> </tr> <tr> <td>타워크레인</td> <td>32ton</td> <td>대</td> <td>1</td> </tr> <tr> <td>원치</td> <td>3ton</td> <td>대</td> <td>1</td> </tr> <tr> <td>용접기</td> <td>15KVA</td> <td>대</td> <td>2</td> </tr> </tbody> </table> <p>[주] ①, ② “생략”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임으로 현장여건·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ton	대	1	크레인	30ton	대	1	50ton	대	1	150ton	대	1	200ton	대	1	타워크레인	32ton	대	1	원치	3ton	대	1	용접기	15KVA	대	2	5-1 소각로 설치 1. 공정별 설치 “현행과 같음” 2. 사용장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지게차</td> <td>5ton</td> <td>대</td> <td>1</td> </tr> <tr> <td rowspan="4">크레인</td> <td>30ton</td> <td>대</td> <td>1</td> </tr> <tr> <td>50ton</td> <td>대</td> <td>1</td> </tr> <tr> <td>150ton</td> <td>대</td> <td>1</td> </tr> <tr> <td>200ton</td> <td>대</td> <td>1</td> </tr> <tr> <td>타워크레인</td> <td>32ton</td> <td>대</td> <td>1</td> </tr> <tr> <td>원치</td> <td>3ton</td> <td>대</td> <td>1</td> </tr> <tr> <td>용접기</td> <td>15KVA</td> <td>대</td> <td>2</td> </tr> </tbody> </table> <p>[주]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ton	대	1	크레인	30ton	대	1	50ton	대	1	150ton	대	1	200ton	대	1	타워크레인	32ton	대	1	원치	3ton	대	1	용접기	15KVA	대	2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ton	대	1																																																																			
크레인	30ton	대	1																																																																			
	50ton	대	1																																																																			
	150ton	대	1																																																																			
	200ton	대	1																																																																			
타워크레인	32ton	대	1																																																																			
원치	3ton	대	1																																																																			
용접기	15KVA	대	2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ton	대	1																																																																			
크레인	30ton	대	1																																																																			
	50ton	대	1																																																																			
	150ton	대	1																																																																			
	200ton	대	1																																																																			
타워크레인	32ton	대	1																																																																			
원치	3ton	대	1																																																																			
용접기	15KVA	대	2																																																																			
5-2 폐열보일러 설치	보완 (이월)	5-2 폐열보일러 설치 1. 공정별 설치 “생략” 2. 사용장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지게차</td> <td>5ton</td> <td>대</td> <td>1</td> </tr> <tr> <td rowspan="3">크레인</td> <td>150ton</td> <td>대</td> <td>1</td> </tr> <tr> <td>200ton</td> <td>대</td> <td>1</td> </tr> <tr> <td>300ton</td> <td>대</td> <td>1</td> </tr> <tr> <td>타워크레인</td> <td>30ton</td> <td>대</td> <td>1</td> </tr> <tr> <td>원치</td> <td>3ton</td> <td>대</td> <td>1</td> </tr> <tr> <td>용접기</td> <td>15KVA</td> <td>대</td> <td>6</td> </tr> </tbody> </table> <p>[주] ①, ② “생략” ③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임으로 현장여건·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ton	대	1	크레인	150ton	대	1	200ton	대	1	300ton	대	1	타워크레인	30ton	대	1	원치	3ton	대	1	용접기	15KVA	대	6	5-2 폐열보일러 설치 1. 공정별 설치 “현행과 같음” 2. 사용장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지게차</td> <td>5ton</td> <td>대</td> <td>1</td> </tr> <tr> <td rowspan="3">크레인</td> <td>150ton</td> <td>대</td> <td>1</td> </tr> <tr> <td>200ton</td> <td>대</td> <td>1</td> </tr> <tr> <td>300ton</td> <td>대</td> <td>1</td> </tr> <tr> <td>타워크레인</td> <td>30ton</td> <td>대</td> <td>1</td> </tr> <tr> <td>원치</td> <td>3ton</td> <td>대</td> <td>1</td> </tr> <tr> <td>용접기</td> <td>15KVA</td> <td>대</td> <td>6</td> </tr> </tbody> </table> <p>[주]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ton	대	1	크레인	150ton	대	1	200ton	대	1	300ton	대	1	타워크레인	30ton	대	1	원치	3ton	대	1	용접기	15KVA	대	6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ton	대	1																																																																			
크레인	150ton	대	1																																																																			
	200ton	대	1																																																																			
	300ton	대	1																																																																			
타워크레인	30ton	대	1																																																																			
원치	3ton	대	1																																																																			
용접기	15KVA	대	6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ton	대	1																																																																			
크레인	150ton	대	1																																																																			
	200ton	대	1																																																																			
	300ton	대	1																																																																			
타워크레인	30ton	대	1																																																																			
원치	3ton	대	1																																																																			
용접기	15KVA	대	6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5-4 반건식 반응탑 설치	보완	5-4 반건식 반응탑 설치 1. 공정별 설치	5-4 반건식 반응탑 설치 1. 공정별 설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작업구분</th> <th style="width: 15%;">직종</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표면손질</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소운반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td> <td>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td> <td>인/ton 조/ton</td> <td>0.62 0.20</td> </tr> <tr> <td rowspan="4">◦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td> <td>플랜트제관공</td> <td>인/ton</td> <td>0.94</td> </tr> <tr> <td>플랜트용접공</td> <td>”</td> <td>1.25</td> </tr> <tr> <td>특별인부</td> <td>”</td> <td>1.01</td> </tr> <tr> <td>건설기계운전조</td> <td>조/ton</td> <td>1.13</td> </tr> <tr> <td rowspan="5">◦ 본체 설치 - 반응물 배출장치(Lump Crusher) 및 Rotary Valve 설치 포함 ※ 소석회 분무장치 제외</td> <td>플랜트기계설치공</td> <td>인/ton</td> <td>1.78</td> </tr> <tr> <td>플랜트제관공</td> <td>”</td> <td>0.54</td> </tr> <tr> <td>플랜트용접공</td> <td>”</td> <td>0.92</td> </tr> <tr> <td>특별인부</td> <td>”</td> <td>1.53</td> </tr> <tr> <td>비계공</td> <td>”</td> <td>1.85</td> </tr> <tr> <td></td> <td>건설기계운전조</td> <td>조/ton</td> <td>0.48</td> </tr> <tr> <td>◦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body> </table>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 표면손질	“생략”	“생략”	“생략”	◦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생략”	“생략”	“생략”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생략”	“생략”	“생략”	◦ 소운반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조/ton	0.62 0.20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플랜트제관공	인/ton	0.94	플랜트용접공	”	1.25	특별인부	”	1.01	건설기계운전조	조/ton	1.13	◦ 본체 설치 - 반응물 배출장치(Lump Crusher) 및 Rotary Valve 설치 포함 ※ 소석회 분무장치 제외	플랜트기계설치공	인/ton	1.78	플랜트제관공	”	0.54	플랜트용접공	”	0.92	특별인부	”	1.53	비계공	”	1.85		건설기계운전조	조/ton	0.48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 표면손질	“생략”	“생략”	“생략”																																																															
◦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생략”	“생략”	“생략”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생략”	“생략”	“생략”																																																															
◦ 소운반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조/ton	0.62 0.20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플랜트제관공	인/ton	0.94																																																															
	플랜트용접공	”	1.25																																																															
	특별인부	”	1.01																																																															
	건설기계운전조	조/ton	1.13																																																															
◦ 본체 설치 - 반응물 배출장치(Lump Crusher) 및 Rotary Valve 설치 포함 ※ 소석회 분무장치 제외	플랜트기계설치공	인/ton	1.78																																																															
	플랜트제관공	”	0.54																																																															
	플랜트용접공	”	0.92																																																															
	특별인부	”	1.53																																																															
	비계공	”	1.85																																																															
	건설기계운전조	조/ton	0.48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생략”	“생략”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5-4 반건식 반응탑 설치	보완	2. 사용장비 <table border="1" data-bbox="389 220 1160 491"> <thead> <tr> <th>장비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크레인</td> <td>250톤</td> <td>대</td> <td>1</td> </tr> <tr> <td>타워 크레인</td> <td>30톤</td> <td>대</td> <td>1</td> </tr> <tr> <td>지게차</td> <td>7.5톤</td> <td>대</td> <td>1</td> </tr> <tr> <td>용접기</td> <td>15KVA</td> <td>대</td> <td>2</td> </tr> </tbody> </table>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크레인	250톤	대	1	타워 크레인	30톤	대	1	지게차	7.5톤	대	1	용접기	15KVA	대	2	2. 사용장비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크레인	250톤	대	1																					
타워 크레인	30톤	대	1																					
지게차	7.5톤	대	1																					
용접기	15KVA	대	2																					
<p>[주] ① 본 장비는 반건식 반응탑 조립·설치시, <u>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규격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u></p>	<p>[주] ① 본 장비는 반건식 반응탑 조립·설치에 <u>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u></p>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5-5 탈질설비 설치	보완	5-5 탈질설비 설치 1. 공정별 설치 <table border="1" data-bbox="394 252 1155 1437"> <thead> <tr> <th>작업구분</th> <th>직종</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표면손질</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소운반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td> <td>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td> <td>인/ton 조/ton</td> <td>0.66 0.21</td> </tr> <tr> <td>◦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현장교정 - 수송 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td> <td>플랜트제관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td> <td>인/ton " " 조/ton</td> <td>1.91 2.04 3.93 1.32</td> </tr> <tr> <td>◦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sion Device 조립 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td> <td>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제관공 비계공 특별인부 플랜트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td> <td>인/ton " " " " 조/ton</td> <td>4.28 0.54 1.66 2.28 3.97 4.07</td> </tr> </tbody> </table>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 표면손질	“생략”	“생략”	“생략”	◦ 소운반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조/ton	0.66 0.21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생략”	“생략”	“생략”	◦ 현장교정 - 수송 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생략”	“생략”	“생략”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조/ton	1.91 2.04 3.93 1.32	◦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sion Device 조립 포함	“생략”	“생략”	“생략”	◦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	“생략”	“생략”	“생략”	◦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제관공 비계공 특별인부 플랜트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 " 조/ton	4.28 0.54 1.66 2.28 3.97 4.07	5-5 탈질설비 설치 1. 공정별 설치 <table border="1" data-bbox="1191 252 1953 1437"> <thead> <tr> <th>작업구분</th> <th>직종</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표면손질</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소운반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td> <td>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td> <td>인/ton 조/ton</td> <td>0.66 0.21</td> </tr> <tr> <td>◦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현장교정 - 수송 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td> <td>플랜트제관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td> <td>인/ton " " 조/ton</td> <td>1.91 2.04 3.93 1.32</td> </tr> <tr> <td>◦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sion Device 조립 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td> <td>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제관공 비계공 특별인부 플랜트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td> <td>인/ton " " " " 조/ton</td> <td>4.28 0.54 1.66 2.28 3.97 4.07</td> </tr> </tbody> </table>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 표면손질	“생략”	“생략”	“생략”	◦ 소운반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조/ton	0.66 0.21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생략”	“생략”	“생략”	◦ 현장교정 - 수송 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생략”	“생략”	“생략”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조/ton	1.91 2.04 3.93 1.32	◦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sion Device 조립 포함	“생략”	“생략”	“생략”	◦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	“생략”	“생략”	“생략”	◦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제관공 비계공 특별인부 플랜트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 " 조/ton	4.28 0.54 1.66 2.28 3.97 4.07	“현행과 같음”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 표면손질	“생략”	“생략”	“생략”																																																																																									
◦ 소운반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조/ton	0.66 0.21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생략”	“생략”	“생략”																																																																																									
◦ 현장교정 - 수송 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생략”	“생략”	“생략”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조/ton	1.91 2.04 3.93 1.32																																																																																									
◦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sion Device 조립 포함	“생략”	“생략”	“생략”																																																																																									
◦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	“생략”	“생략”	“생략”																																																																																									
◦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제관공 비계공 특별인부 플랜트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 " 조/ton	4.28 0.54 1.66 2.28 3.97 4.07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 표면손질	“생략”	“생략”	“생략”																																																																																									
◦ 소운반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조/ton	0.66 0.21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생략”	“생략”	“생략”																																																																																									
◦ 현장교정 - 수송 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생략”	“생략”	“생략”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조/ton	1.91 2.04 3.93 1.32																																																																																									
◦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sion Device 조립 포함	“생략”	“생략”	“생략”																																																																																									
◦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	“생략”	“생략”	“생략”																																																																																									
◦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제관공 비계공 특별인부 플랜트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 " 조/ton	4.28 0.54 1.66 2.28 3.97 4.07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5-5 탈질설비 설치	보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35%;">작업구분</th> <th style="width:15%;">직종</th> <th style="width:10%;">단위</th> <th style="width:10%;">수량</th> <th style="width:30%;"></th> </tr> </thead> <tbody> <tr> <td>◦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 분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td> <td>플랜트기계설치공</td> <td>인/ton</td> <td>4.28</td> <td></td> </tr> <tr> <td></td> <td>플랜트제관공</td> <td>”</td> <td>0.54</td> <td></td> </tr> <tr> <td></td> <td>비계공</td> <td>”</td> <td>1.66</td> <td></td> </tr> <tr> <td></td> <td>특별인부</td> <td>”</td> <td>2.28</td> <td></td> </tr> <tr> <td></td> <td>플랜트용접공</td> <td>”</td> <td>3.97</td> <td></td> </tr> <tr> <td></td> <td>건설기계운전조</td> <td>조/ton</td> <td>4.07</td> <td></td> </tr> <tr> <td>◦ Sealing 용접 - 용접용 Support 설치 및 운반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body> </table> <p>[주] ①, ②, ③ “생략”</p>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	“생략”	“생략”	“생략”		◦ 분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플랜트기계설치공	인/ton	4.28			플랜트제관공	”	0.54			비계공	”	1.66			특별인부	”	2.28			플랜트용접공	”	3.97			건설기계운전조	조/ton	4.07		◦ Sealing 용접 - 용접용 Support 설치 및 운반포함	“생략”	“생략”	“생략”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생략”	“생략”		<p>“현행과 같음”</p>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	“생략”	“생략”	“생략”																																																						
◦ 분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플랜트기계설치공	인/ton	4.28																																																						
	플랜트제관공	”	0.54																																																						
	비계공	”	1.66																																																						
	특별인부	”	2.28																																																						
	플랜트용접공	”	3.97																																																						
	건설기계운전조	조/ton	4.07																																																						
◦ Sealing 용접 - 용접용 Support 설치 및 운반포함	“생략”	“생략”	“생략”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생략”	“생략”																																																						
<p>2. 사용장비</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20%;">장비명</th> <th style="width:15%;">규격</th> <th style="width:10%;">단위</th> <th style="width:10%;">수량</th> <th style="width:45%;"></th> </tr> </thead> <tbody> <tr> <td>크레인</td> <td>200톤</td> <td>대</td> <td>1</td> <td></td> </tr> <tr> <td>지게차</td> <td>5톤</td> <td>대</td> <td>1</td> <td></td> </tr> <tr> <td>용접기</td> <td>15KVA</td> <td>대</td> <td>2</td> <td></td> </tr> </tbody> </table> <p>[주] ① 본 장비는 탈질설비 조립·설치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규격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크레인	200톤	대	1		지게차	5톤	대	1		용접기	15KVA	대	2		<p>“현행과 같음”</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크레인	200톤	대	1																																																						
지게차	5톤	대	1																																																						
용접기	15KVA	대	2																																																						
	<p>[주] ① 본 장비는 탈질설비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p>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5-6 여과집진기 설치	보완	2. 사용장비 <table border="1" data-bbox="389 252 1162 639"> <thead> <tr> <th>장비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지게차</td> <td>5톤</td> <td>대</td> <td>1</td> </tr> <tr> <td>크레인</td> <td>50톤</td> <td>대</td> <td>1</td> </tr> <tr> <td>크레인</td> <td>100톤</td> <td>대</td> <td>1</td> </tr> <tr> <td>크레인</td> <td>200톤</td> <td>대</td> <td>1</td> </tr> <tr> <td>타워크레인</td> <td>30톤</td> <td>대</td> <td>1</td> </tr> <tr> <td>용접기</td> <td>15KVA</td> <td>대</td> <td>3</td> </tr> </tbody> </table> <p data-bbox="389 651 1173 762">[주] ① 본 장비는 여과집진기 설치시 <u>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u> 이므로 <u>현장여건, 작업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규격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u></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톤	대	1	크레인	50톤	대	1	크레인	100톤	대	1	크레인	200톤	대	1	타워크레인	30톤	대	1	용접기	15KVA	대	3	2. 사용장비 <p data-bbox="1189 252 1951 639"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 data-bbox="1189 651 1962 799">[주] ① 본 장비는 여과집진기 조립·설치에 <u>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u></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톤	대	1																													
크레인	50톤	대	1																													
크레인	100톤	대	1																													
크레인	200톤	대	1																													
타워크레인	30톤	대	1																													
용접기	15KVA	대	3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5-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 치	보완	5-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치 1. 공정별 설치 <table border="1" data-bbox="398 252 1151 1070"> <thead> <tr> <th>작업구분</th> <th>직종</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 하고 목재를 정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rowspan="5">◦ 반응조제 및 탱크류 조립·설치</td> <td>플랜트제관공</td> <td>인/ton</td> <td>1.93</td> </tr> <tr> <td>플랜트용접공</td> <td>”</td> <td>1.93</td> </tr> <tr> <td>플랜트기계설치공</td> <td>”</td> <td>0.96</td> </tr> <tr> <td>비계공</td> <td>”</td> <td>0.96</td> </tr> <tr> <td>특별인부</td> <td>”</td> <td>1.93</td> </tr> <tr> <td></td> <td><u>건설기계운전조</u></td> <td><u>조/ton</u></td> <td><u>0.96</u></td> </tr> <tr> <td rowspan="4">◦ 소석회, 활성탄 공급설비 조립·설치</td> <td>플랜트기계설치공</td> <td>인/ton</td> <td>3.47</td> </tr> <tr> <td>비계공</td> <td>”</td> <td>1.74</td> </tr> <tr> <td>플랜트용접공</td> <td>”</td> <td>1.74</td> </tr> <tr> <td>특별인부</td> <td>”</td> <td>2.6</td> </tr> <tr> <td></td> <td><u>건설기계운전조</u></td> <td><u>조/ton</u></td> <td><u>0.96</u></td> </tr> <tr> <td>◦ 혼합기, 이젝터, 로타리밸브 설치</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 data-bbox="389 1078 584 1106">[주] ①, ②, “생략”</p>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 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생략”	“생략”	“생략”	◦ 반응조제 및 탱크류 조립·설치	플랜트제관공	인/ton	1.93	플랜트용접공	”	1.93	플랜트기계설치공	”	0.96	비계공	”	0.96	특별인부	”	1.93		<u>건설기계운전조</u>	<u>조/ton</u>	<u>0.96</u>	◦ 소석회, 활성탄 공급설비 조립·설치	플랜트기계설치공	인/ton	3.47	비계공	”	1.74	플랜트용접공	”	1.74	특별인부	”	2.6		<u>건설기계운전조</u>	<u>조/ton</u>	<u>0.96</u>	◦ 혼합기, 이젝터, 로타리밸브 설치	“생략”	“생략”	“생략”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생략”	“생략”	5-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치 1. 공정별 설치 <table border="1" data-bbox="1196 252 1944 1070"> <thead> <tr> <th>작업구분</th> <th>직종</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 하고 목재를 정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rowspan="5">◦ 반응조제 및 탱크류 조립·설치</td> <td>플랜트제관공</td> <td>인/ton</td> <td>1.93</td> </tr> <tr> <td>플랜트용접공</td> <td>”</td> <td>1.93</td> </tr> <tr> <td>플랜트기계설치공</td> <td>”</td> <td>0.96</td> </tr> <tr> <td>비계공</td> <td>”</td> <td>0.96</td> </tr> <tr> <td>특별인부</td> <td>”</td> <td>1.93</td> </tr> <tr> <td></td> <td><u>건설기계운전조</u></td> <td><u>조/ton</u></td> <td><u>0.96</u></td> </tr> <tr> <td rowspan="4">◦ 소석회, 활성탄 공급설비 조립·설치</td> <td>플랜트기계설치공</td> <td>인/ton</td> <td>3.47</td> </tr> <tr> <td>비계공</td> <td>”</td> <td>1.74</td> </tr> <tr> <td>플랜트용접공</td> <td>”</td> <td>1.74</td> </tr> <tr> <td>특별인부</td> <td>”</td> <td>2.6</td> </tr> <tr> <td></td> <td><u>건설기계운전조</u></td> <td><u>조/ton</u></td> <td><u>0.96</u></td> </tr> <tr> <td>◦ 혼합기, 이젝터, 로타리밸브 설치</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 data-bbox="1180 1078 1451 1106">[주] ①, ② “현행과 같음”</p> <p data-bbox="1234 1118 1955 1145">③ <u>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u></p>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 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생략”	“생략”	“생략”	◦ 반응조제 및 탱크류 조립·설치	플랜트제관공	인/ton	1.93	플랜트용접공	”	1.93	플랜트기계설치공	”	0.96	비계공	”	0.96	특별인부	”	1.93		<u>건설기계운전조</u>	<u>조/ton</u>	<u>0.96</u>	◦ 소석회, 활성탄 공급설비 조립·설치	플랜트기계설치공	인/ton	3.47	비계공	”	1.74	플랜트용접공	”	1.74	특별인부	”	2.6		<u>건설기계운전조</u>	<u>조/ton</u>	<u>0.96</u>	◦ 혼합기, 이젝터, 로타리밸브 설치	“생략”	“생략”	“생략”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생략”	“생략”	<p data-bbox="1487 651 1653 678">“현행과 같음”</p>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 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생략”	“생략”	“생략”																																																																																																																											
◦ 반응조제 및 탱크류 조립·설치	플랜트제관공	인/ton	1.93																																																																																																																											
	플랜트용접공	”	1.93																																																																																																																											
	플랜트기계설치공	”	0.96																																																																																																																											
	비계공	”	0.96																																																																																																																											
	특별인부	”	1.93																																																																																																																											
	<u>건설기계운전조</u>	<u>조/ton</u>	<u>0.96</u>																																																																																																																											
◦ 소석회, 활성탄 공급설비 조립·설치	플랜트기계설치공	인/ton	3.47																																																																																																																											
	비계공	”	1.74																																																																																																																											
	플랜트용접공	”	1.74																																																																																																																											
	특별인부	”	2.6																																																																																																																											
	<u>건설기계운전조</u>	<u>조/ton</u>	<u>0.96</u>																																																																																																																											
◦ 혼합기, 이젝터, 로타리밸브 설치	“생략”	“생략”	“생략”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생략”	“생략”																																																																																																																											
작업구분	직종	단위	수량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 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생략”	“생략”	“생략”																																																																																																																											
◦ 반응조제 및 탱크류 조립·설치	플랜트제관공	인/ton	1.93																																																																																																																											
	플랜트용접공	”	1.93																																																																																																																											
	플랜트기계설치공	”	0.96																																																																																																																											
	비계공	”	0.96																																																																																																																											
	특별인부	”	1.93																																																																																																																											
	<u>건설기계운전조</u>	<u>조/ton</u>	<u>0.96</u>																																																																																																																											
◦ 소석회, 활성탄 공급설비 조립·설치	플랜트기계설치공	인/ton	3.47																																																																																																																											
	비계공	”	1.74																																																																																																																											
	플랜트용접공	”	1.74																																																																																																																											
	특별인부	”	2.6																																																																																																																											
	<u>건설기계운전조</u>	<u>조/ton</u>	<u>0.96</u>																																																																																																																											
◦ 혼합기, 이젝터, 로타리밸브 설치	“생략”	“생략”	“생략”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생략”	“생략”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5-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 치	보완	2. 사용장비 <table border="1" data-bbox="394 288 1167 507"> <thead> <tr> <th>장비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지게차</td> <td>5톤</td> <td>대</td> <td>1</td> </tr> <tr> <td>크레인</td> <td>70톤</td> <td>대</td> <td>1</td> </tr> <tr> <td>용접기</td> <td>15KVA</td> <td>대</td> <td>3</td> </tr> </tbody> </table> <p data-bbox="394 515 1167 624">[주] ① 본 장비는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조립·설치시, <u>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규격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u></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톤	대	1	크레인	70톤	대	1	용접기	15KVA	대	3	2. 사용장비 <p data-bbox="1496 384 1659 411"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 data-bbox="1189 515 1962 660">[주] ① 본 장비는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조립·설치에 <u>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u></p>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지게차	5톤	대	1																	
크레인	70톤	대	1																	
용접기	15KVA	대	3																	